


인권정보자료실
CPa1.87

99년 행정법 개정에 대한 민간단체 대응 자료

2004. 4. 30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정보자료실
CPa1.8

99년 행정법 개정에 대한
민간단체 대응 자료

2004. 4. 30

 민권운동사랑방

99년 행정법 개정에 대한 민간단체 대응 자료

<목차>

1. 행정법 개정과 관련한 인권단체 내부 워크숍 제안 및 안내문
 2. 정부의 행정법 개정 관련 인권단체 내부 워크숍
 - 행정법 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자료 정리 사랑방)
 - 현행 행정법 및 행정법 개정안 조문 비교
 - 청원권 관련(손민영)
 - 건달징역 관련(최정학)
 - 개정행정법의 문제(유해정)
 3. 법무부의 행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박찬운)
 4. 행정법 개정에 대한 수정보충안(최정학)
 5. 중요 쟁점별 행정법 대비표(현행 및 개정안 대 민간 수정안 등)
 6. 법무부의 행정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 참고자료: 1994년 교도관들이 쓴 행정법 개정안(대외 비)

2004. 4. 30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동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 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사랑방 홈페이지: <http://www.interpia.net/~rights> E-mail: rights@interpia.net

수 신 :

발 신 : 인권운동사랑방 (담당: 고근예)

제 목 : 행정법 개정과 관련 인권단체 내부 워킹숍 안내

날 짜 : 1999년 6월 15일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시는 귀 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 법무부가 추진해 온 행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그 주요골자가 공개됐습니다.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설치 내용을 포함한 이번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교정관계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5개월여 동안 단지 2차례의 모임을 자졌을 뿐입니다.

이에 감옥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온 인권단체에서 이번 법무부 행정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실제 교도소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하면서, 행정제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인권단체 내부 워킹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워킹숍은 행정법 개정안에 대한 학술적인 문제제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출소자들의 발제와 인권단체들의 토론을 통하여 법무부가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추출해내고 그것을 민간단체들의 의견으로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6월 18일까지 개인과 단체로부터 의견제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맞추어 우리의 의견을 내기 위해 워킹숍 날짜를 급하게 잡았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행정법 개정과 관련 인권단체내부 워킹숍>>

1부- 법무부 행정법 개정(안) 해설 (약 30분)

2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교도소의 실태·문제점을 내용으로 발제, 토론 (약 2시간)

발제자(출소자·인권단체 활동가- 3명)

▶ 일 시 : 6월 16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정부의 행정법 개정 관련 인권 단체 내부 workshop

• 순서 •

- 1부 개정행정법 설명 / 최정학
- 2부 발제 - 현 행정제도의 문제
 - (1) 청원권과 관련해서 / 손민영
 - (2) 건달징역과 관련해서 / 현정덕
 - (3) 개정행정법의 문제 / 유해정
- 토론 / 참석자 전체
- 사회 / 서준식

-
- 일시 / 1999. 6. 16 (수)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강당
 -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
-

행형법 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

□ 행형법 개정방향

- 수용자에 대한 인권의 신장과 수용질서의 확립
-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정비
- 민영교도소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

□ 주요 개정내용

가. 수용자에 대한 인간 존엄성 천명(안 제1조의 2)

<개정요지>

- 수용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차별 금지를 명문으로 선언

<개정이유>

- 헌법이념인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원칙을 반영하여 수용자 처우에 있어서 인권을 중시한다는 의지를 밝힘.

나. 민영교도소 설치·근거규정의 신설(안 제4조의 2)

<개정요지>

- 법무부장관은 교도소등의 설립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의 자격 및 권한, 시설 및 수용자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개정이유>

- 민영교도소를 포함한 교도소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청원제도의 보완·정비(안 제6조)

<개정요지>

-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게 함

<개정이유>

- 권리구제수단인 청원을 활성화하여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공정성을 도모함

라. 교도관에 의한 강제력 사용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14조)

<개정요지>

- 수용자가 도주, 공무집행방해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교도관은 강제력을 사용하여 그 행위를 제지하거나 교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 교도소 등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위협하는 사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지수단을 법률에 명시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위법시비를 차단함

마. 계구사용 요건의 강화(안 제14조의 2)

<개정요지>

- 계구의 사용요건 중 “기타 필요한 경우”를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함
- 계구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정함

<개정이유>

- 계구의 사용은 수용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사용요건을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음
- 계구를 징벌의 강화 또는 대체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계구의 남용을 방지함

바. 접견참여 및 서신검열의 완화(안 제18조, 제18조의 2)

<개정요지>

- 수용자의 접견에 대한 교도관의 참여 및 서신에 대한 검열을 필요한 사항에서 임의적인 사항으로 변경함

<개정이유>

- 불필요한 접견참여 및 서신검열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터서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신장하고 인원 절감으로 내실 있는 접견·서신 감독을 도모하며 수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사. 수용자의 전화통화 허용(안 제18조의 3)

<개정요지>

- 수용자에게 통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교통수단을 확대 보장하여 수용생활의 안정과 사회복귀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 통화내용의 청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화 내용청취에 대한 위법시비를 차단하기 위함

아. 서신등의 영치에 대한 예외인정(안 제19조의 단서)

<개정요지>

- 수용자의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 서신 기타 문서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 군형법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서신등의 상당기간 소지를 허용하는 것이 실무현실과 국민정서에 부합함

자.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사유 완화(안 제29조 제1항)

<개정요지>

- 수용자를 외부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경우를 “교도소 등의 안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서 “수용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완화함

<개정이유>

- 교도소 등의 안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용자에 대한 외부병원 이송여부를 교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비인도적이므로 수용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함

차. 수행자의부통학 및 출장직업훈련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32조)

<개정요지>

- 수행자에 대하여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교육기관, 기업체 등에 통근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 수행자의 사회적응력 배양에 유용한 외부통학이나 출장직업훈련 등의 시행 시 수행자를 외부로 통근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

카. 신문열람의 근거 및 신문·도서열람의 제한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3조)

<개정요지>

-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함

-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열람을 불허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삭제할 수 있게 함

<개정이유>

- 실무상 이미 실시하고 있는 수용자의 신문열람 및 신문·도서열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위법시비를 차단함

타. 집필의 허가 및 제한규정 신설(안 제33조의 3)

<개정요지>

-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서류작성과 문학, 학술 등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도록 함
- 집필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 실무상 시행되고 있는 집필제도를 법률에 보장함으로써 수용자의 집필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함

파. 작업의 면제에 관한 규정의 정비(안 제37조)

<개정요지>

- 남편 및 자매의 사망과 남편의 기일도 작업의 면제사유에 포함시킴
- 작업의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수용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작업이 면제되지 않도록 함

<개정이유>

- 남자수형자 본위의 작업면제에 관한 규정방식을 남녀평등의 원칙에 맞도록 개선함
- 수형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작업의 면제를 고려하는 것이 실무와 작업면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하. 귀휴허가요건 완화 및 기간 조정(한 제44조 제3항)

<개정요지>

- 귀휴요건 중 형기의 2분의 1 경과를, 형기의 3분의 1 경과로 완화함
- 수형자의 귀휴기간이 형기간중 3주일이내였던 것을 1년중 7일 이내로 변경함

<개정이유>

- 수형자의 귀휴요건을 완화하여 그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귀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귀휴기간이 장기형수형자와 단기형수형자 모두 형기간중 3주일 이내로 되어 있어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조정함

거. 징벌조정 및 일사부재리와 비례의 원칙 천명(한 제46조)

<개정요지>

- 징벌의 종류 중 “청원작업의 정지”를 “2월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로 함
-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해서 부과할 수 없으며 수용자의 규율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도록 함

너. 지소의 징벌위원회 구성방법 명시(안 제47조 제2항)

<개정요지>

- 지소의 징벌위원회 위원은 7급이상 교도관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

<개정이유>

- 지소의 징벌위원회 구성방법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징벌절차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함

더. 징벌집행의 유예제도 도입(안 제48조의 2)

<개정요지>

- 징벌 결정시 정상을 참작하여 2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도록 함

<개정이유>

- 규율을 위반했다라도 올바른 수용생활에 대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징벌집행을 유보하여 징벌제도가 교육적인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

러. 기타

- 지소수용의 근거 규정마련(안 제2조 제4항)

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하도록 하여 직제상의 지소에 관한 입법적 불비를 해소함

- 미결수용자에 대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시청 허용(안 제33조의 2)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의 대상을 수형자에게 전수용자로 확대함

- 징벌 감면 절차의 조정(안 제48조 제2항)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장이 바로 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에 대한 수의처분의 연속성을 보장함

- 참관금지 대상의 보완(안 제63조)

참관금지의 대상을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에서 조정·보완하여 실무상의 구치소 및 구치지소에 대한 참관의 적법성을 확보함

- 용어정리

- "교도소, 소년교도소,(및, 또는) 구치소"를 "교도소등"으로
- "소생유아의 대동"을 "출산한 유아를 교도소등의 안에서 양육할 것"으로
-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 "단"을 "다만"으로
- "타처"를 "다른 장소"로
- "구치소내" 및 "24시간내"를 "교도소등의 안" 및 "24시간 안"으로
- "적용한"을 "상용한"으로(한 제32조 제1항)
-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건전한 인격형성"으로
- "부고"를 "사망통지"로, "처의 기일"을 "배우자의 기일"로
- "성적과 행장"을 "실적과 행형성적"으로
- "불구자"를 "장애인"으로
- "시체"를 "사체"로, "가장"을 "임시매장"으로
- "본법"을 "이 법"으로 각각 용어를 순화, 정비함

현행 행형법

행형법 개정(안)

<p>제2조[구분수용] ①교도소에는 만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②소년교도소에는 만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③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④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의 명칭, 위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5 본조개정)</p> <p>제6조[청원]①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1995.1.5 본항신설) ③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1995.1.5 본항신설) ④청원에 대한 규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1995.1.5 본항신설)</p>	<p>제1조중 "본 법"을 "이 법"으로, "수형자"를 "수형자"로, "미결수용자"를 "미결수용자"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 이 법의 집행에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수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제4항을 동조제항으로 하고, 제5항중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를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한다. 제3조제3항중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교도소등"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교도소등의 민간위탁) ①법무부장관은 교도소등의 설립 및 운영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등 교도소등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를 "교도소등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교도소등을"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도소, 소년교도소를"을 "교도소등을"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를 "수용자"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	---

제8조[신입자의 수용등]①수용자로서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에 신입하는 자(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및 재판서 기타 적법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1995.1.5 본항개정)

②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건강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1995.1.5 본항신설)

③신입의 여자가 소생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생후 18월에 이르기까지 당해 소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수용중에 출생한 유아에 대하여도 제3항에 준한다.(1995.1.5 본항개정)

제14조[계구]①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1995.1.5 본항개정)

②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포승
2. 수갑
3. 사슬(1995.1.5 본항개정)
4. 안면보호구(1995.1.5 본항개정)

③계구의 모양과 규격,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1995.1.5 본항신설)

제8조제1항중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교도소등"으로, "신입자"를 "신입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생유아의 대동"을 "출산한 유아를 교도소등의 안에서 양육할 것"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고지사항)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 서신에 관한 사항
3. 규율, 징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제9조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의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2조중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교도소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 폭행, 자해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③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모양과 규격,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강제력의 행사)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에 한한다.

-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3. 도주하거나 하려고 할 때
4. 기타 교도관 및 수용자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②제1항에서 강제력이라 함은 신체적인 힘에 의한 실력행사와 교도봉·가스분사기·최루탄 등 보안장비의 사용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사전에 수용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무기의 사용]①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1995.1.5 본문개정)

- 1. 교도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하려고 하여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고 그 투기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3. 도주할 목적으로 다중이 소요하는 때
4. 도주를 기도하는 자가 제지에 불청하거나 그 계획을 계속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인명, 신체,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교도관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안(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밖에서의 작업 또는 호송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용자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1995.1.5 본항개정)

제18조[접견과 서신의 수발]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1995.1.5 본항개정)

②수용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1995.1.5 본항개정)

③수용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참여와 검열을 요한다. 단,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 접견의 경우를 제외한다.(1995.1.5 본항개정)

④수용자가 수발하는 서신의 검열, 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1995.1.5 본항신설)

⑤소장이 교부를 불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1995.1.5 본항신설)

⑥접견참여, 서신의 검열 및 접견과 서신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62.12.24 본항개정)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안(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밖에서의)"를 "교도소등의 안(교도소등의 밖에서)"로, "필요한 한도내에서 수용자외의 자"를 "수용자외의 자"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1.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협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고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할 때
4. 도주를 기도하는 자가 교도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계획을 계속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인명, 신체,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14조의2제1항의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관의 무기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제1항중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내"를 "교도소등의 안"으로, "타처"를 "다른 장소"로 하고, 동조제2항중 "타처"를 "다른 장소"로, "불능"을 "불가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를 "교도소등"으로, "경찰서"를 "경찰관서"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접견)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접견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접견참여 및 접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8조의2(서신)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다.</p> <p>②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p> <p>③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p> <p>④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p> <p>⑤소장이 교부를 불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p> <p>⑥서신의 검열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8조의3(전화통화) ①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통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p> <p>③통화허가의 범위, 통화내용의 청취, 요금부담 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p>
<p>제19조[서신등의 영치]수용자에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람한 후 이를 영치한다.(1995.1.5 본조개정)</p> <p>제29조[병원수용]①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안에서 수용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소장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밖의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한다.</p>	<p>제19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p> <p>제29조의제목 "(병원수용)"을 "(병원이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소장은 수용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등의 밖에 있는 병원(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치료감호소를 포함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p>
<p>제30조[임부등]임부, 산부와 노쇠자는 병에 걸린 자에 준한다.</p>	<p>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0조(임산부등) 임산부와 노쇠자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한다.</p>
<p>제32조[교육]①무교육자 또는 소년수용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적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심신미약자 또는 노쇠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p> <p>②소장은 수형자의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촉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980.12.22 본항개정)</p>	<p>제32조제1항의 본문중 "적용"을 "상용"으로 하고,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건전한 인격형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외부의 교육기관, 기업체 등에 통근하게 할 수 있다.</p>

<p>제33조[도서열람]수용자가 도서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1995.1.5 본조개정)</p>	<p>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3조(신문·도서의 열람) ①수용자는 자비부담으로 신문 또는 도서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장은 그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p> <p>③신문 또는 도서의 열람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p> <p>제33조의2중 "수형자"를 "수용자"로 한다.</p> <p>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33조의3(집필)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서를 작성하거나 문학, 학술 기타 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2.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내용 <p>②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시간·장소, 집필한 문서 등의 보관 및 회부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교육규정]교육의 과목, 시간과 도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p>	<p>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4조(교육규정) 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p> <p>제36조제1항의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p> <p>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7조[작업의 면제]수용자 중 부모, 처자 또는 형제의 부고를 받은 자는 2일간, 부, 모 또는 처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p>	<p>제37조(작업의 면제) 수형자중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지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9조[작업수입등]①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p> <p>②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과와 행장 기타 서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은 지급할 수 있다.</p>	<p>제39조제2항중 "행장"을 "행형성적"으로 하고, 동조제3항의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p>
<p>제40조[위로금, 조위금]①수형자가 취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불구자가 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수형자가 작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43조[영치금품의 환부] ①영치금품은 석방할 때에는 본인에게 환부한다.</p> <p>②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한다. 단, 사망후 1년을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p> <p>③도주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본인이나 직계의 존속이나 비속에게 교부한다. 단, 도주후 1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p> <p>제44조[분류, 처우 및 귀휴] ①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심사분류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p> <p>②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방시설(도주방지를 위하여 통산적인 수용설비 또는 조치의 일부를 강구하지 아니한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에 수용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합한 처우를 할 수 있다.(1995.1.5 본항신설)</p> <p>③1년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누우치는 빛이 뚜렷하며 행장이 우수한 때에는 형기간중 3주일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1995.1.5 본항개정)</p> <p>④분류, 처우 및 귀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1980.12.22 본조개정)</p> <p>제45조[규율]수용자의 규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1995.1.5 본조개정)</p>	<p>제41조제1항의 본문중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교도소등”으로 하고,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p> <p>제42조제3항의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p> <p>제43조제2항의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동조제3항의 본문중 “본인이나 직계의 존속이나 비속”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하며,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p> <p>제4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1년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무기형의 경우 7년이상)을 경과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 때에는 1년중 10일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p> <p>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휴허가요건 및 귀휴기간에 관계없이 3일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p> <p>1.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사망한 때</p> <p>2.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p> <p>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45조(규율 등) ①수용자는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②수용자는 소장이 정하는 일과시간표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③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p>
---	---

<p>제46조[징벌] ①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에 처한다.(1995.1.5 본항개정)</p> <p>②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1. 경고</p> <p>2. 1월 이내의 도서열람 제한</p> <p>3. 청원작업의 정지</p> <p>4.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p> <p>5. 2월 이내의 금치</p> <p>6.-9.(1995.1.5 삭제)</p> <p>③징벌을 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p> <p>제47조[징벌위원회] ①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p> <p>②징벌위원회는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부소장과 과장중에서 임명한다.(1995.1.5 본항개정)</p> <p>제48조[징벌의 정지, 면제] ①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p> <p>②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가 누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1995.1.5 본항개정)</p>	<p>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벌을 과할 수 있다.</p> <p>1.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등의 형벌규에 저촉되는 행위</p> <p>2. 자해행위</p> <p>3. 정당한 이유없는 직업·교육 등의 거부 또는 태만</p> <p>4. 흉기·주유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의 제작·소지·사용·수수·은닉</p> <p>5. 기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p> <p>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2. 1월이내의 신문·도서열람 제한</p> <p>3. 2월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p> <p>③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해서 부과할 수 없으며, 규율위반의 동기 및 경중, 행위후의 정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수용목적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p> <p>제47조제2항중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교도소등”으로, “과장”을 “과장(기소의 경우에는 7급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임명”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한다.</p> <p>제48조제2항중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벌을 경감 또는 면제”를 “징벌을 감경 또는 면제”로 한다.</p> <p>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48조의2(징벌집행의 유예) ①징벌위원회는 징벌을 결정할 경우에 규율위반의 동기 및 정황, 행형성적, 누우치는 빛 등을 참작하여 그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p> <p>②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중 당해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유예한 징벌을 즉시 집행한다.</p> <p>③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규율위반행위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p>
---	---

청원사례

- 93.11 형확정으로 청주여자교도소 이송
- 94.11.1 집필제도개선(10.16 법무부장관 훈령)
이후 약 1년간 병상일기집필요구 면담-교무과/보안과 서로 회피
- 95.8.11 소장면담보고전(1차)-구매,집필 등 처우관련
- 8.14 담당, 과장 순의 절차를 밟지 않고한 소장면담 신청은 받아들일 수없다는 이유로 보고 전 기각되었다고 황정단주임이 알려줌
- 8.22 서무과장면담보고전-구매문제
~ 보안과장 2회, 교무과장(교무과에서 보고전이 분실되어 면담신청을 알지 못했다고) 1회 면담보고전 제출
- 8.24 황주임-서무과장 면담신청 철회중용, 자신이 모두 해결해 주겠다고
- 9.14 소장면담보고전(2차)-내용은 1차와 같음
황주임(이날까지 5차례) - 서무과장면담 신청 철회 중용, 추석전/후의 두번 면담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없음
- 9.15 오전 소장-집필을 제외한 처우문제 적절히 처리하도록 담당에게 지시하겠다고
~16 담당,과장-지시받은적 없다. 담당도 아닌 황주임이 무엇을 해결한다고 약속할 수있는가
- 9.18 오전8시경 청원서 전달 황주임(청원할 것이라는 얘기 여러번/16일 최후 통보)
동생 손민아에게 청원 사실 알리는 편지 작성/제출(19일 오후 4시경 교무과로 넘어감)
- 9.19 오전9시, 오후 1시, 3시 황주임과 면담-집필보고전 없는 청원서 제출은 절차 미비이며, 집필허가받은 후 별도의 용지에 청원서 작성해야하는 것이라고 시비
오전 11시 소장 면담-청원서 제출 사실 및 청원 내용을 소장이 이미 알고 있음을 확인
오후 4시 교무과 오주임 면담
- 9.20 오전 9시 황주임 면담 신청(고영미 교도관 통해)하여 개인적으로 사정을 참작하여 집필보고전 제출하겠다는 의사 밝힘
손민아에게 편지
- 9.21 오전11시 보안과장-집필후 노트는 일단 영치하고 출소시 반출여부는 그때 다시 판단에 따르자
오전 3시 편지지 결장사건
- 9.22 오전9시 운동시간에 불시 검방 - 아무것도 안나오자 9시 40경 황주임이 검방사실 통보
오후 1시 구매교사 면담
오후 5시경 황주임-집필노트는 일단 영치하되 반출은 보장할 수 없고, 집필해서는 안되는 내용이 있을시 몇개월간 집필금지나 징벌한다는 조건부 승락을 받아들이라고
/나-집필 내용으로 징벌한다는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만큼 내규에 집필노트 영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
- 9.27 12시 40경 보안과장 면담 접견일을 미리 알리는 민아 전화왔다는 얘기
1시 30경 오전에 신청한 황주임 면담-면담은 뒷사람이 시간있을때 그가 알아서 면담여부 결정 앞으로는 접견대상을 가족으로 제한할 것임
4시 교무과 박계장-집필노트 영치관련 교무과의 할일은 없다. /청원서 내용은 쓸수없는 제한사항이 있으며, 제한사항을 청원할때 불이익과 징벌을 받게된다
5시 접견민원인 서신받음-면회불허로 되돌아감
- 9.28 오전9시 30 면담신청 받은 황주임과-청원내용은 내권리이므로 대화/협상거리 아니다
집필보고전 썼으니 용지지급을 29일까지 하라
- 9.29 오전9시 황주임에게 9.27면회 불허건 항의중 26일 손민아 면회조차 불허하고 되돌려보냈음을 알게됨, /26,27 면회건 소장지시-당일 4시경 소장에게 보고했다는 얘기

제51조제1항중 "교정성적"을 "행형성적"으로, "양호"를 "우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수형중의 행상"을 "행형성적"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동전)"을 "(석방시기)"로 한다.
제55조중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내"를 "교도소등"으로 한다.
제56조중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교도소등"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및 본문중 "가장"을 "가매장"으로 한다.
제59조의 단서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60조중 "가장"을 "가매장"으로 한다.
제61조중 "송부"를 "교부"로 한다.
제63조중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을 "미결수용자와 사형이 확정된 자가 수용된 거실"로 한다.
제64조중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를 "미결수용자"로, "상호접견"을 "상호접촉"으로 한다.
제65조중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의 수용자"를 "미결수용자"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의 수용자"를 "미결수용자"로 한다.
제69조중 "본법"을 "이 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작업의 정지의 징벌이 결정되었거나 집행중인 경우에는 그 집행개시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9.19일자 집필보고전을 보안과장이 폐기했음을 알게됨
/청원용지지급, 청원결과 회신지연에 관해 아무런 설명 없음

9.30 오전8시 황주임에게 청원 방해및 보복에 관한 소송을 위해 집필보고전 제출예정 알림
9/19 보고전 폐기건, 면회거부가 소장지시에 의한 사실 등 재확인

10.2 오전 9시 고소장 집필보고전 제출(고영미)-오후 5시경 폐방무렵 처리

10.4오전 9시 황주임이 사동담당을 통해 고소장집필보고전의 무인이 선명치 않고, 고소내용이 상세하지 않다고 다시 제출 요구

오전 11시 교도소와 관리를 위협한다며 보안과장이 폭언 "노트영치는 해준다는데 니가 무슨 심사로 물고 늘어지는거냐...", 위협적인 압력 행사

10.5 8시 백승헌 변호사에게 편지 10장(빠른우편)- 소송의뢰, 사건내용(일지식 기재)

오후 윤점숙계장 찾아옴(처음에는 황주임 부탁으로, 나중에는 옆에서 보기가 딱해 스스로 찾아왔다고)-집필, 청원과정의 경위 설명

오후 2시 교무과 오주임-백변에게 보내는 편지 불허 통보

10.6 오전9시까지 윤계장 두번 면담-편지지 걸장 사건, 불시 검방 건 변명,
/이기간 중 보안과장과 황주임이 고영미 담당을 불러 9/19 청원서 집필 보고전 제작성 및 보고 작성 일시를 10월로 바꿀 것 지시, 거절 소동

10.8 오후 3시 윤계장에게 편지지 걸장사건 관련 공장에 지시없음이란 내확인에 3하에도 동일한 지시 있었다고 얘기들음.
청원/고소 철회요구 거절
위협(깨끗한 청주, 살기 힘들 건 나일뿐)

10.11 오후4시 윤계장-접견은 2회, 친족만 허용
고소장 집필보고전 허락됐으니 마음대로 해라

이송방침이 이때 결정된 듯

10.12 손민아에게 편지(빠른우편) -청원방해고소에서 소장은 부담스러우니 빼는게 어떨까
보안과장 96.1 정년이니 소송을 앞당기라

10.13 오전10시 윤계장 - 고소말고 처음대로 청원하라. 청원서 집필보고전은 보안상 절차이며 허가사항 아니다. 청원서 작성용 용지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10.16 보안과장면담

10.17 오후 4시 교무과 오주임-9.27 면회 불허로 되돌아가신 안옥희 어머님께 보내는 사과 편지 불허/폐기
백변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는 집필허가를 받지않은 소송서류라서 불허/폐기
고소는 자유로이 할수 있으나 교도관에 대해서는 어떤내용도 쓸수 없으니 그건 빼고, 소송집필 보고전 나왔으니 다시 고소내용을 쓰라

10.21 오전10시30 황주임 면담-지난번 고모가 소장과 면회조건 불시 변경에 관해 면담.접견횟수는 2회(10/24면회시 고모는 소장이 이전과 같이 월4회+ 가족은 이후도 가능한 허용하겠다고 말함)로 줄이나 대상은 제한없다. 안옥희어머님도 면회 가능하다
고소장 집필보고전 허가일자 확인 요청

10.23 오후4시 보안과장 면담-10/5 폭언, 협박의 변명, 사과/
노트영치에 대한 규정에 없는 징벌운운에 대한 경위 설명. 황주임 잘못 인정, 사과시키겠다 순리에 맞는 내애기를 더 들겠다고 다시 면담 약속

10.24 오후 4시 고모/경민 면회 소동(구옥선)

10.25 오전9시 교무과 오주임-9/22, 9/24 민아에게 쓴 편지 3통(모두 빠른 우편) 불허 및 보안과에 직접 가져가 처리하라 소동
일방적 불허에 대해 보안과와 사실확인할 시간달라고 겨우 폐기보류시킴

오전10시 VTR시청(신속화)중 황주임- 동생에게쓴 편지는 보안과에선 소송서가 아닌 편지로 분

류해서 보냈으니 교무과 소관사항
10/5 백변에게쓴 편지는 소송서류라면 교무과 소관아니다

오전 11시 윤계장 면담-교무과와 보안과의 실수 변명

오후 3시 보안과장-집필허가와 고소장 철회를 일괄 타결하자
10/24면회신청을 보안과장이 소장에게 허가받으려 했으나 소장부재였다고 거짓말(민아/이모 면회불허가 보안과장 지시였다고 황주임이 얘기)
시간이 부족해 다음날 다시 얘기하자

10.26 오전 7시20 개방전 보안과장-교도관과의 분란이 이송사유
상부지시라 교도소의 수작아니다
25일 이송은 광주시의원 수용관련 이송이다
소송은 김천가서 실컷하라
9시경 수정, 완전 포송상태로 달랑 돌려 차에 실림

<기타 청원 관련 부당 처우>

편지 지연- 황주임 손에서만 3~4일 지체
공안간에도 처우 차별
접견기록부는 항상 별지 기록후 재작성
집필노트에 나혼자만 소급 확인필-10.24전후 구옥선 근무일에 한꺼번에 2달여분을 보름 정도씩 검열한 것으로 보이도록
8.22 편지도 불허했음
<소장은>
불허되는 편지는 반드시 소장의 결재가 요구되면 별도로 철회놓게 되어있으므로 설혹 담당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고 내용을 가감했다라도 전모를 알 수있었으며,
사전 전화로 특별면회허가를 받았음에도 10/24면회 소동에 고모가 소장을 만나 항의하자 자신이 나와 여러차례 얘기하여 잘 해결되고 있다고 어제(10/23)도 나를 만났다고 하였음

95.10.26

김천이송후 즉시 청주의 소장,보안과장, 황주임을 고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손민아와 백변 앞으로 보냄
며칠후 집필보고전을 내고, 정식 고소장을 써야 보낼수 있다하여 정식고소장 작성하고, 보고전 제출
약 1주일 후 김천지역 검찰청에 직접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집필을 허용한다는 소장결재 나옴
그간 가족이 2회 면회왔으나 고소장을 쓸수 있도록 사건내용을 얘기하지못하게 제지

건달징역에 대하여

법무부의 행정법 개정안이 입법을 앞둔 상태에서 재소자의 인권을 고려한 시민단체의 입장이 필요한 상태이다.

우선 교도소 실정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이 교도소 실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소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구제기능이 꼭 막혀 있는 것입니다.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 처절하게 짓으면 그제야 무슨 내용인가 검토합니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돈,조직,배경있는-특히 교도관)재소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빠르게 반응합니다.

사소한 문제조차 교도소에 처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이런 일방적 권력관계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례. 구독하는 신문이 안 들어 왔을 때

공장에서 일이 끝나고 방에 들어왔을 때 신문이 안 들어 온 경우, 담당을 불러 신문이 안 왔다고 알리고, 담당은 교무과로 연락해서 재소자가 신문을 보는지 안 보는지, 보낸 건지, 아닌지등을 알아본 후 보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사방 담당은 재소자에게 설명과 함께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신문이 바로 오면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담당에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고, 이때부터 담당을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들이 사소한 일조차 능동적으로 알아보고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교도소에서 마음을 편히 지낸다는 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의 절대 열악이나 재소자를 무시하는 교도관을 만나면 쫓겨나 살게되지만, 제도와 소내의 억압적 분위기가 훨씬 재소자를 절망스럽게 합니다.

크게 보아 재소자를 억압하는 영역은 법적 미비 때문입니다. 특히 구제절차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면담이나 청원자체가 애초의 문제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청원 내용을 보면 청원권 방해 때문인데 청원내용보다 나중에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자체가 더 스트레스를 줍니다.

재소자를 청원이 거의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도소의 기본사고가 모든 문제를 없던 것으로 하려는 경향과 관행입니다. 모든 절차가 보고와 결재 절차를 동반하기 때문에 일선 담당교도관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분을 해도 처분을 안해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일선 담당입니다. 하지만 보고를 하면 윗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윗사람의 입장에서는 보고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보고 없이 알아서 하게되는 일이 사실 대부분이고,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교도관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일선 담당이 의무만큼 실제적 권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소자간에도 분명한 권력관계가 존재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돈이 없는 재소자는 건달들에게 하인과도 같은 위치에서 생활합니다.

조직폭력배의 세력화가 교도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식적으로 검토될 때는 현 상황에서 빠지곤 합니다.

공식적 통제는 국가가 하고 실제집행은 교도관이, 집행유지의 원활함은 건달들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달징역이라고 알려진 광주, 부산, 전주교도소의 경우는 누구의 영향력이 더 우위에 있는지 의문입니다.

건달징역: 재소자 용어로 해당 교도소가 조직폭력배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교도소의 지배적인 권력 하에 있는가로 나누어집니다. 건달을 '대접'해 주는 교도소는 '건달징역'이고 대접 없이 자신의 밥그릇만 찾아먹는 징역을 '또박징역'이라 합니다. 또박을 밥그릇입니다.

● 사방생활

인원; 대방의 겨우 12명

건달 2-3명, 나이가 있거나 스스로 입시가 있는 경우 2-3명

힘없고 일하는 사람 4-5명

역할분담; 피라미드식으로 편성되며 방 청소, 화장실, 식기 등을 나누어 담당합니다.

대부분 재소자가 나누어 청소와 심부름을 하며, 복도밖에 나가는 소지도 이중에서 나옵니다.

문제; 단순히 일만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방 돌아가는 통제 대상이기 때문에,

방이 안 돌아 갈 때 스트레스와 압력을 많이 받고, 심지어는 폭력의 노리게 감이 되기도 합니다.

→ 큰 형님이 늦게까지 책을 보거나 하면서 잠을 안 잘 경우 심부름하는 재소자도 잠을 자지 않습니다. 책을 보다가 휴지가 필요하다면 휴지를 대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운동시

목표의 경우 건달들은 테니스도 치는데(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공 쭈는 재소자가 양쪽 코트에 한 명씩, 투명 정도가 붙고 잘치는 후배와 배우며 칠 경우 후배가 공을 한번씩 넘길 때마다 "형님 공갑니다"하며 말을 합니다. 세력화가 아주 공공연합니다.

● 건달징역에 편집하기

영화 넘버3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불사파 조직으로 엮어달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조직으로 들어가면 '인사뎡기는 구조'에 편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조직에 있거나 사건시 조직으로 엮이면 교도소에서 인사뎡기는 구조에 편입될 가능성 큼니다. '인사뎡긴이' 라는 말은 교도소 용어인데 밖에서의 이해관계를 떠나 교도소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세력화 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선후배의 보증(?)으로 90°씩 인사하는 겁니다. 물론 밖에 나가면 자신의 조직이외에는 인정을 안하게 됩니다.

일단 인사뎡기게 되면 작업장에서는 '서 있는 애들'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령 100여명이 작업하는 위탁공장(자체 생산물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외부의 작업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공장)의 경우 2-3명은 작업시간에 일을 안하고 왔다 갔다 눈치껏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작업시간에 작업장 이탈은 징벌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인사 뎡기게 되면 사방에서도 굳은 일은 안 합니다. 인사뎡길때 이런 일을 수처로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일을 시키게 되면 큰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 ; 공장별, 사방별 커다란 인사 뎡기는 구조로 엮여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규모 있는 일이 발생하면(가령 체육대회라든지 작업량이 늘어날 경우라든지) 판구계장이나 주임 등이 중간이상 되는 건달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매끄럽게 풀립니다.

작은 규모의 사방생활에서도 '포커를 하지 마라'든지, '떠들지 마라'든지 하는 경우에도 방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방의 건달에게 또는 다른 방의 건달에게 이야기하면 바로 시정이 됩니다. 시정이 안될 수 없는 것이 타당한 말을 거부할 경우 주먹이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나갑니다.

이들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아래 있는 아주 어린 여러 명의 새끼건달들이 집단적 시위와 함께 폭행을 하기 때문에 지시를 내린 사람이나 손 좀 보라고 사주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빠져나갑니다.

● 징벌

징벌이 상당수가 폭행사고이고, 방에서 사소한 것으로 발단이 됩니다.

신문을 가지고 싸우고, 말 한마디 실수해서 싸우지만 서로 싸웠다 해도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조치만 받거나 주임들로부터 호통만 듣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뚜렷이 외부에 표가 나면(부러지거나 피가 많이 나거나하면) 교도소도 공식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원인과 결과보다는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양측이 전부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관행은 건달 여러 명이 한 명을 집단 구타해도 맞은 재소자와 총대를 메는 어린 새끼건달 한 명이 징벌을 가는데 육체적인 제한만 감수하면 생활은 크게 봐서 징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겨울엔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이불의 숫자와 보온의 제한을 두기 때문입니다.

건달이 아닌 재소자가 건달과 싸워서 함께 징벌을 받게 되면 징벌기간에는 그래도 건달만 하지만, 징벌이 풀리면 해당 교도소에서 생활하기 힘들게 됩니다. 온갖 시달림 끝에 이감이 최선책으로 되버립니다.

문제의식; 문제가 있음에도 상황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조직폭력배가 교도소에서 공공연하게 결합하며 더 크게 교도소를 좌지우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잘 못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개선해가고 있지만 이 건달 징역도 함께 풀려야 합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화된 힘을 가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건달의 힘은 힘없고 뺨없는 사람에게 폭력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안

1. 인사행기는 현황과 교도소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조직폭력(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 현황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분리 처우 해야합니다. 이들을 한 방에 넣어 식기도 닦고, 방도 청소하게 해야 합니다.

2. 재소자간의 분쟁시 분쟁 결과로 징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인식을 바꿔야합니다.

3. 재소자들에게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제 기능이 적극 검토되고 즉각 집행되도록 해야합니다.(소원수리함이 유명무실한데 재소자간의 문제는 '전방'-방을 옮기는 것-조치와 조사를 통해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법적 차원에서 재소자의 실제적 삶이 반영되어 인권이 보장되도록 범조항에 명문화하여야 합니다. '재소자는 타 재소자로부터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이 의무는 교도관의 기본적인 의무 중에 하나이고 불이행시 반드시 해당 교도소장에게 불이익이 부과되어야 한다'

개정 행형법안, 다시 바라보기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행형법 개정에 착수, 지난 5월 새로 손질한 행형법안을 내놓았다. 현재 이 법안은 입법예고 된 상태로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 임시국회내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무런 검증도 거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안의 작성자는 교정당국과 교정당국에 선정한 몇몇 학자층에 한정되어졌다. 또한 법안은 지난 논의 과정에서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안이 입법예고 된 현재까지도 법무부는 법안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가 행형법 개정안의 내용을 엿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매스컴에 '수형자의 권리 대폭 강화'라는 기조로 보도된 기사를 접하는 것이 전부였다. 근데 이제 의문이든다. 매스컴에 소개된 것처럼 이 개정안이 수형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면 왜 법무부가 이 법안이 교정국 담을 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지... 하지만 이러한 의문은 현행 행형법과 개정안의 조문을 비교하다보면 의외로 쉽게 풀린다. 법무부가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매스컴에 보도된 것처럼 수형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의 빗나간 행형철학만을 여과없이 드러내준다.

무엇이 문제인가?

법무부가 내놓은 개정법안의 문제는 아래와 같이 크게 몇가지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1. 이미 시행되던 조치들을 법제화 한 것에 불과하다.

(개정안 18조 3 전화사용) 전화사용은 작년부터 시행되어온 조치로 이에대한 법률적 정비가 필요했을 뿐이다.

(개정안 33조 3 집필) 집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보장되어 온 권리였다. 또한 이 조항은 행형법에 명시되어 있지않더라도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기초적인 사람의 권리에 속한다. 따라서 이를 명시화 한것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도 함정은 숨어있다. 그간 문제가 된 부분은 집필의 허용여부가 아니라 집필한 내용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교정시설측은 교정시설내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집필내용의 외부 반출을 금지해왔으며 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경우에도 개인의 집필내용을 되돌려주지않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설이 필요했던 내용은 집필 문서에대한 외부반출을 자유화하는 규정이었으나 개정 행형법은 이러한 문제에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않고 있다.

2. 돈 안드는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

개정법안은 말로할 수 있는 변화만 추구했다. 교정시설내 인권침해를 제외하고 수형자들에게 요구되는 부분들은 교육에 관한 사항들과 시설에 관한 문제들이다. 하지만 행형법안을 눈씻고 찾아보아도 교육의 질을 어떻게 강화하려고하는지에대한 언급은 제외된 실정이다. 단지 32조 3항을 신설해 수형자의 외부 교육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형자에게 한정되게 적용될 뿐이어서 대부분의 수형자들은 이전과 같은 절망적인 교육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시설면에서있어서도 국제기준의 경우 수형자가 살고 있는 교정시설에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개정 법안은 이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상태이다.

3. 합법적 영역내에서의 인권침해 의혹

- 교도관의 무기사용 명시화(개정 법안 14조 2)

교도관은 교정시설내에서 법보다 앞서는 신의 존재다. 교도관들의 권력은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고, 이러한 권력은 "정당한 공무수행"이란 미명하게 항상 보장되어졌다.

따라서 행형법 개정에서 있어 첨가되어야할 내용은 교도관의 권력남용을 저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인데 이번 개정에서는 수형자의 권리침해에대한 보장이 아니라 그 반대의 법안이 신설된 형편이다. 즉 관

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교도관들의 무기사용이 합법화 되고 무기가 명시됨에 따라 교도관들의 수행자 인 권침해는 더욱 광범위하게 자행될 것으로 보인다.

- 징벌위원회내에 교정과 학식이 있는 풍부한 외부인사의 위촉 (개정 법안 47조 2)

징벌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위촉되게 된다면 과연 어느누가 외부인사로 위촉되어질 것인가? 분명 교정 시설측에서 편히 여기는 인사가 위촉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사의 위 촉은 오히려 징벌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어 수행자의 징벌을 합리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외부인사의 위 촉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4. 법률상의 정비일 뿐 교정시설내 변화는 의문이다.

- 적용대상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개정안 18조 3 전화사용)

(개정안 44조 3 귀휴) 귀휴조항은 2분의 1을 복역한 경우를 3분의 1 복역자로 바꾸어 그 대상자가 넓어 진듯하나 실제적으로 '행형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실제적 적용대상의 변화가 가능한지 는 의문이다.

- 교정시설내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개정안 6조 (청원)의 2, 5)

수형자의 권리가 명문화된 조항은 행형법 중 청원권 뿐. 하지만 이 청원권조차 사문화되어 재소자가 감 옥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감옥 내에서 부닥치게되는 인권침해문제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9월 부터 98년 8월 현재 법무부 장관 앞으로 접수된 수행자의 청원수는 총 144건. 같은 시기 교도소 수용인 원이 7만 명에 이르는 것에 미루어본다면 청원을 행한 수행자는 0.002%에 불과하다. 이는 수행자의 대부분의 청원권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음을 반영함과 동시에 알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된 청원권 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원을 제기하려는 수행자들은 교도관들로부터 앞으로의 수행 생활이 고달플 것이라는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게 돼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이 과정에서 청원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그간 청원의 고질적인 문제는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설된 2, 5조항은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교정시설내에서 수행자는 청 원시 청원의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소장에게 제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원을 내겠다는 보고 전을 내는 것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무부의 현 개정안이 교정시설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대한 의문이 간다.

(개정안 18조 1(접견), 2(서신)) 접견과 서신에 관한 조항을 이전에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 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 할 수 있다"에서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 다(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필요적 사안을 임의적 사안으로 변경했 다며 밝혔다. 하지만 접견시 교도관의 입회와 서신시 검열을 법무부의 주장처럼 임의적 사항으로 적용 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만약 법무부가 실제적인 접견과 서신의 권리를 보장하려 했다면 법무 부는 접견과 서신에 대한 특별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 접견과 서신의 권 리를 대대적으로 보장했어야 한다.

5. 미결수용자에 대한 언급이 없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원활한 수사를 위해 교정시설에 일시적으로 구금되어진 상태다. 하지만 현재 미결 수의 처우는 기결 수행자의 처우에 준하도록 행형법에 규정되어있어 미결수들의 권리가 상당히 침해되 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개정 행형법은 미결수의 처우에관한 별도의 규정을 명문화했어야하나 개정 법안은 미결수에 대한 별도의 처우를 신설하지 않아 미결수들의 권리침해는 합법적 영역내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6. 여성과 소수자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최저기준규칙(22조 3항)과 유럽규칙(26조 3항) 등에서는 수행자의 건강권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 행행법과 개정안은 교정시설내에서 수행자가 건강의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 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고 있지 못하다.

- 또한 여성의 경우에도 최저기준규칙 등의 국제조약은 여성을 가능한 분리된 시설에 구금하고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완비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여성 시설에는 산전 및 산후조리 등 모든 간호 및 처 치를 위해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인, 어린이, 소년, 노인, 환자, 장애자에 대 해서는 권리 및 그 특별한 지위를 목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야하고 그것을 차별로 분류하지 않도 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사회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7. 민영교도소안을 신설하고 있다.

(개정법안 4조 2)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행형법개정과 민영교도소 도입관련 공청회'에서 민영교도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전국의 교도소가 적정인원¹⁾을 30% 초과해 교도소가 과밀화되어진데 따라 민영교도소 설립으로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덜면서 교도소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 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의 민영화라는 경제정책이 교도소에서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민영교도소 설립의 문제는 형벌집행의 부과에대한 문제임으로 가볍게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민영교도소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구체화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민영교도소의 설립은 과연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는가?

- 민영교도소 도입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의견

· 민영교도소 이윤추구의 문제

민영교도소는 이윤창출을 그 목적으로 하여 가능한 비용을 줄이도록 힘쓸 것이다. 따라서 교도소의 상 황을 극복하자는 것이 오히려 구금자들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 전자통 제장치기 사용된다면 교도소를 비인간화시킬 수 있다.

· 교정이념의 상실

교도소의 민영화가 구금자의 교정교화에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 교도소 운영의 효율성, 비용절감의 문제로만 제기되고 있다. 즉 행정이 경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제기	반대의견	찬성의견
형벌권의 문제	근대 민주국가에 있어서 형벌권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입장으로 교도소 운영을 사기 관에 위임하는 것은 근대 민주국가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다. 즉,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국 가만이 사법을 강제로 실행할 권한을 가져야한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만 사법은 수범자의 눈에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민영교도소에서의 권력행사의 정당성은 법률에 근거해 법이 특정사인에게 권력 행사의 권한을 부여한다면 획득되어진다 고 본다.
형벌부과와 형벌집행의 분리	- 형벌부과와 형벌집행의 불가분성 ①독거구금이나 상훈체계와 같은 규 율의 실행은 형벌집행의 한 내용으로 이는 형벌부과의 변형된 형태 ②분류처우, 가석방과 연결됨 ③가석방과 사면이 형벌 집행자의 의 견이 반영되는 바 형벌집행과 형벌부 과의 친밀성	사법부의 형벌부과와 형벌의 집행은 분 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벌의 집행 을 사인에게 맡길 수 있다고 본다.
책임소재 문제	소내 교도관들의 권한남용 및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의 여부	문제발생시 국가에 책임소재 물음

1. 법무부가 밝힌 적정인원은 5만 5천여명. 하지만 지난해를 수용자 수는 7만 3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현 재에도 꾸준히 6만 8천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행형법 개정에 대한 소결

현재 법무부가 내놓은 행형법 개정안은 민영교도소 설치를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민영교도소를 제외한 다른 규정의 손질은 형식적인 수준으로 그치고 있으며 어떠한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인권침해의 시비를 불러올 여지도 많다.

감옥은 그 나라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말이 있다. 최근에 한 출소자는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감옥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우리의 감옥은 인권침해의 대표적 고유명사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감옥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주 적으며 이를 위한 개혁 역시 퇴보에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행형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감옥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들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형법의 개정은 그 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해 온 인권침해자들의 인권을 되찾고 이와 유사한 피해들을 최소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 따라서 현재상태의 행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또 다시 많은 수형자들이 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형법 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현 법무부안을 저지하기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다.

법무부의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변호사 박찬운

I. 행형제도 개혁에 관한 기본입장

1. 3원칙에 입각한 제도의 개혁

(1) 행형제도개혁의 수준은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행형의 국제화

-제도개혁에는 우리가 가입한 각종의 인권조약 및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행형에 관한 국제원칙을 반영해야 함.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로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조약,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피구금자보호원칙(1988년 UN 총회 결의), 변호사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 유럽형사시설규칙, 범집행관행동강령등이 있음.

(2) 제도개혁의 내용은 사회화의 방향으로: 행형의 사회화

-행형시설에서의 생활수준이나 양식이 일반사회의 그것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함(행형시설의 비사회성과 이상성의 배제)

-피구금자의 주체성을 가능한 존중하면서 사회복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 훈련을 강화

-행형시설에 대한 일반사회로부터의 참여와 간섭의 제도화

(3) 제도개혁의 방법은 법률화의 방향으로: 행형의 법률화

-피구금자의 처우를 시설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법정화 해야함(“소장은 ...을 할 수 있다”는 규정방식에서 “피구금자는 ...을 할 수 있다” 혹은 “소장은 ...을 해야한다”의 방식으로).

-피구금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최대한 행형법에 법정화

2. 행형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대체입법으로서의 개혁

-위의 기본방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행형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하고 현재의 행형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구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일본의 경우 1982년 법무성이 감옥법을 대체하는 형사시설법과 유치장시설법을 국회에 상정하였는데¹⁾ 그 방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줌.

-대체입법을 제정한다면 그 명칭도 바꾸어야 할 것인바, 가칭 “피구금자처우법”이라는 명칭을 생각할 수 있음.²⁾

-이러한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법무부의 독자적인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고 바람직 하지도 않음. 법무부와 법조단체 그리고 학계, 행형제도에 관심있는 단체와 개인이 연

1 이들 두 개의 법을 감옥2법이라고 부르는 데 82년 이후 3회에 걸쳐 국회에서 의안폐기 되었다. 그 이유인즉, 이들 법률이 국제인권수준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체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가 없다. 특히 교도소와 구치소의 근거법인 형사시설법의 경우 그 체제는 우리의 행형법 개혁에 많은 시사를 준다. 즉, 동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수형자의 처우, 제3편 피구류자(미결수용자)의 처우, 제4편 상형확정자의 처우, 제5편 잡칙(영치, 상벌, 불복제도, 석방, 사망, 벌칙등)의 총 169조로 이루어진 법안이다. 종래의 감옥법이 우리의 행형법과 같은 체제의 총 75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히 완전한 구법의 폐지와 신법의 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행형법이라는 명칭은 그 명칭 자체에서 형법을 집행한다는 의미 밖에는 없어 현재 요구되고 있는 피구금자에 대한 적절한 교정교화의 의미가 연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피구금자처우법”으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구한 업적을 공유하고 상호토론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 위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법무부에 가칭 "행형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

3. 금번 개정안에 관한 기본 입장

-기본방향은 위에서 언급한 대체입법으로의 개혁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물(연구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시간과 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노고등)이 도사리고 있음을 인식함.

-한편, 우리의 행형현실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하루 빨리 개선을 기다리고 있음.

-따라서 대체입법으로의 개혁을 지금 당장 도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금번의 법무부의 개정안에 개혁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여 이하와 같은 의견을 내기로 하였음.

II. 법무부 개정안에 관한 구체적 의견

이하의 의견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음. 하나는 법무부 개정안 자체에 대한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개정안에서는 언급이 빠졌지만 금번 개정에서 꼭 포함시켜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수용자에 대한 인간 존엄성 천명(안 제1조의 2)

● 개정요지

수용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차별 금지를 명문으로 선언

● 의견

-개정안에 원칙으로 찬성하나 차별금지의 대상이 협소함.

-개정안에는 국적에 의한 차별 및 사상에 의한 차별도 포함되어야 함.

-현행제도에서는 사상범은 분류·누진처우에서 제외하여 사상을 이유로 차별대우하고 있으며, 외국인 피구금자의 수가 점증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언어소통과 이질적인 문화를 강요받으므로 실질적으로 내국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

-위와 같이 행형법이 개정 된다면 후속적으로 사상범에 대해 차별적인 처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수형자 분류처우규칙등을 개정해야 함.

● 수정안

제1조의 2(인간존엄성의 존중 등)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상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민영교도소 설치·근거규정의 신설(안 제4조의 2)

● 개정요지

법무부 장관은 교도소 등의 설립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의견

-개정안에 반대함. 민영교도소의 설립은 시기상조임.

-형제복지원이나 양지원 등의 사회보호시설에서의 인권유린행위를 상기하면 민간에 의한 구급시설의 운영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더욱 열악하게 할 수 있음.

-민간부문의 행형은 이익추구의 방향으로 형벌권이 집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집행과정에서 비인간적인 처우의 가능성은 현재의 제도보다 더욱 농후해질 것임.

-민간교도소의 운영은 교정공무원의 퇴직 후 자리보장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교정당국과의 유착은 사실상 적절한 감독권한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으며 많은 부정부패가 예상된다.

-민간교도소에서 위법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주로 재소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책임소재의 불분명). 이 경우 국가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법철학·법정책적인 문제로 과연 국가의 형벌권의 집행을 국가가 아닌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것인지 의문

-민간교도소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반대론자도 만만치 않음.

(3) 청원제도의 보완·정비(안 제6조)

● 개정요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게 함.

● 의견

-개정안 자체는 찬성하나 이 개정안만으로는 청원권의 실질적 행사는 어려움.

-현재는 청원권을 수용자 본인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교도관으로부터 방해 받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 불가능.

-차제에 청원권의 행사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교도관이 청원권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경우 이를 처벌할 벌칙규정(이에 대해서는 이하의 '2. 금번 개정에서 추가되어야 부분'에서 언급할 것임)이 필요.

● 수정안

제6조

①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직접 혹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변호사를 통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을 할 수 있다.

(4) 교도관에 의한 강제력사용의 근거규정 마련(안 제14 및 제15조)

● 개정요지

수용자가 도주, 공무집행방해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교도관은 강제력을 사용하여 그 행위를 저지하거나 교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의견

-교도관의 수용자에 대한 실행행사에 관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찬성하나 그 행사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야 한다"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무기사용포함)를 범문화 하면서 그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당연

-경찰관집무집행법 취루탄의 사용의 경우(제10조의 2) 다음과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수정안

-제14조의 1항 및 제15조 1항에 단서조항

... 단, 실행행사(무기)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 경고를 발하여야 하고 수용자에게 최소한의 체적 위해가 가해지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접견참여 및 서신검열의 완화(안 제18조 및 제18조의 2)

● 개정요지

수용자의 접견에 대한 교도관의 참여 및 서신에 대한 검열을 필요한 사항에서 임의적인 사항으로 변경함

● 의견

-개정취지는 찬성하나 그 개선의 방향이 너무 협소함. 추가적인 개선이 요망됨.

-접견과 서신의 수발은 기본적으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수형생

활의 교화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수형자의 경우라도 면회자나 서신의 상대방이 수형자와 특정한 관계에 있을 경우는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야함.

-변호인과의 면회는 변호사의 직무상 접견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수형자의 경우라도) 제한할 수 없으며 접견시에는 필요한 경우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어야 함.

-서신의 검열의 경우에도 변호인(변호사)이나 공무소와의 서신교환(예컨대, 소송관계서류, 고소고발장, 수용시설과 관련된 청원서등)은 절대적으로 검열이 불가하고 불허된 서신이라도 그 불허의 이유에 대해서는 수용자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서신은 사후 적방시 본인에게 교부되어야 함.

● 수정안

제18조(접견)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단,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수용시설의 질서유지상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그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수형자의 접견의 경우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허가를 해야 하며 특히 다음 열거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1)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2)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3) 본인의 일신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요한 용

무를 위해 필요한 자

4) 수형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국의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이 법과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한할 수 없으며 변호인은 접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수형자와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와의 접견도 이를 준용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 접견 혹은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접견의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접견의 방법과 제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2(서신)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단,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수용시설의 질서유지상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그 서신의 교환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수형자의 서신교환의 경우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야 하며 특히 다음 열거의 사람과의 서신교환은 거부할 수 없다.

1)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2)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3) 본인의 일신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요한 용무를 위해 필요한 자

4) 수형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국의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신서를 열어 검열할 수 없다.

1) 법원, 법무부,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서신교환

2) 미결수용자로서 그 변호인과의 서신교환

3) 수형자로서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와의 서신교환

④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이 교부를 불허한 서신은 그 이유를 수용자에게 고지하고 그 내용자체가 범죄행위의 증거물이 아닌 한, 보관하였다가 석방할 때 이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서신의 검열 및 서신의 제한에 관하여 위의 규정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3(전화·전보의 이용)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전화하거나 전보를 보낼 수 있다. 단,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수용시설의 질서유지상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그 전화·전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전화·전보의 이용의 경우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야 하며 특히 다음 열거의 사람과의 전화·전보의 이용은 거부할 수 없다.

1)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6) 수용자의 전화통화 허용(안 제18조의 3)

● 개정요지

수용자에게 통화내용의 청취조건으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의견

-취지는 찬성하나 그 개선방향은 너무 협소함.

-이용조건이 너무 제한적이며 전화 이외에도 전보의 이용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전화와 전보는 사실상 면회나 신서의 수발과 이론상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전화는 면회의 규정을, 전보는 신서의 규정을 준용하면 됨(전화의 경우 모든 경우에 있어 청취를 하는 것은 면회와 비교할 때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음).

● 수정안

18조의 3(전화·전보의 이용)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전화하거나 전보를 보낼 수 있다.

②전화의 경우에는 면회에 관한 규정을, 전보에 관한 경우에는 서신의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화, 전보의 횟수, 시간 및 요금의 부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서신 등의 영치에 대한 예외인정(안 제19조의 단서)

● 개정요지

수용자의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 서신 기타 문서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함

● 의견

-개정취지는 찬성하나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음.

-서신이나 도서 등의 문서의 소지는 수형자에게는 교화의 필요상(재사회화에 도움), 미결수용자에게는 방어권의 행사상 필요한 것임.

-문서의 소지가 사방의 공간부족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소지를 인정해야 함.

-수용자의 문서가 영치되는 경우에는 소장은 이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반환할 수 있어야 함.

● 수정안

제19조(서신 등의 보관)

수용자에게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도화를 포함)는 본인이 이를 보관할 수 있다. 단, 사방의 공간부족으로 그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자는 그 영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문서보관의 확인서를 교부해야 하며 수용자는 사후 그 영치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8)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사유 완화(안 제29조 1항)

● 개정요지

수용자를 외부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경우를 "교도소 등의 안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서 "수용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완화함.

● 의견

-개정의 취지는 찬성하나 개선의 정도는 너무 약함.

-수용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외부진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함.

-수용시설의 의료시설로는 적절한 의료기술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장은 반드시 외부진료를 의뢰하도록 해야 함.

● 수정안

제29조(병원수용)

①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진료를 신청한 경우 그 질병의 종류와 정도 그리고 과거

의 병력을 참작하여 의료상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의 질병이 당해 수용시설의 의료시설로는 적절한 의료기술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수용자를 외부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9) 임신부등

● 개정요지

자구 수정

● 의견

-임산부에 대해서는 산모와 태아(혹은 출산아)의 보호를 위하여 특칙이 요망됨.

-원칙적으로 출산은 외부병원이나 조산소를 이용토록 해야 함.

● 수정안

제30조(임산부등)

①임산부와 노쇠자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한다.

②수용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의 병원 또는 조산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신문열람의 근거 및 신문 도서열람의 제한에 관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33조)

● 개정요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함.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열람을 불허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삭제할 수 있게 함.

● 의견

-종래의 도서열람에 관한 규정보다 수용자의 도서열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반대

-수용자가 서적, 잡지, 신문 기타 공간된 문서(도화를 포함)의 열독을 자의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됨(도서열람권은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미결수용자에게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

-제한하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수용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수용시설은 수용자의 도서열람권을 제한하기 보다는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이를 위해 수용시설에는 법률도서와 신문을 포함한 서적등을 갖춘 도서실을 설치하여 수용자의 도서열람의 편리를 제공하여야 함.

● 수정안

제33조(신문·도서의 열람)

①수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공간된 도서 및 신문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제3자로부터 열람목적의 영치를 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도서 및 신문의 내용이 수용시설의 안전과 교화목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소장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수용시설은 법률도서를 포함한 서적을 갖춘 도서실을 설치하여 수용자의 독서의 편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열람 및 제한의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집필의 허가 및 제한규정 신설(안 제33조의 3)

● 개정요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서류작성과 문학, 학술 등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도록 함.

-집필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의견

-개정취지는 이해하나 집필과 관련된 현재의 과도한 제한을 개선하는 데는 미흡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용자의 집필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수용자의 집필의 결과로 만들어진 저작물은 그의 의사대로 외부로의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제한은 신서의 수발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

● 수정안

제33조의 3(문서도화의 작성)

①수용자는 문서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기타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고 그 작성한 문서도화를 외부에 반출할 수 있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에 반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발신하는 신서에 준하여 그 내용의 검사와 제한을 할 수 있다.

③문서도화의 작성과 외부반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귀휴허가요건 완화 및 기간 조정(안 제44조 제3항)

● 개정요지

-귀휴요건 중 형기의 2분의 1 경과를, 형기의 3분의 1 경과로 완화함.

-수형자의 귀휴기간이 형기간 중 3주일 이내였던 것을 1년 중 7일 이내로 변경함

● 의견

-개정취지는 찬성하나 귀휴요건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행형성적이 양호하다면 형기요건을 더욱 완화하는 것이 교화의 목적상 타당

-특별귀휴로서 수형자의 부모, 자, 배우자, 형제자매등의 근친자가 중태나 사망하였을 경우 귀휴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

● 수정안

제44조(분류, 처우 및 귀휴)

③소장은 1년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행형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1년에 7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④소장은 수형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중태 혹은 사망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현행④항은 5항으로.

(13) 징벌조정 일사부재리와 비례의 원칙 천명(안 제46조)

● 개정요지

-징벌의 종류 중 "정원작업의 정지"를 "2월 이내의 시체에 의한 작업의 정지"로 함.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해서 부과할 수 없으며 수용자의 규율위반 정도에 비례하도록 함.

● 의견

-개정취지는 찬성함. 단, 징벌의 내용은 좀더 개선하여야 함.

-현행의 징벌내용 중 1개월 이내의 도서열람제한,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과 2월이내의 금치는 과도한 징벌로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폐지하거나 경감하여야 함.

-징벌의 사유는 원래 법정화하여야 하나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수정안

제45조(규율) 수용자의 규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징벌)

②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경고

- 2) 1월 이내의 청원작업정지
- 3) 1월 이내의 작업정지
- 4) 1월 이내의 급치

(14) 징벌위원회(안 제47조)

● 개정요지와 의견

- 개정요지는 지소의 징벌위원회 구성방법이나 이것은 특별한 개선안이 아니고 정작 개선을 하여야 할 부분은 징벌절차와 관련된 수용자의 처우임.
- 징벌절차에서 징벌대상자는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고 자기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징벌대상자는 변호사를 징벌절차의 변호인으로서 선임할 수 있어야 함.
- 징벌조사기간 중에는 징벌에 유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 수정안

제47조(징벌위원회)

- ③ 징벌대상자는 변호사를 징벌절차의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징벌대상자 또는 변호인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징벌을 위한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는 징벌에 유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2.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의견

(1)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개선안

● 기본방향

- 미결수용자는 수행자와는 달리 무죄추정을 받는 자이므로 이에 걸맞는 처우가 있어야 함.
- 특히 미결수는 현재 재판중이거나 재판대기중인 사람들이므로 그들에 대한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되어야 함.

● 개선안의 내용

가. 처우원칙의 선언

행형법에 다음과 같은 처우원칙이 선언되어야 할 것임.

- ① 미결수용자는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인간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처우되어야 한다.
- ②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 자로서의 지위에 걸맞게 처우되고, 그 생활은 일반생활상태와 가능한 한 같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③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은 특히 존중되어야 한다.
- ④ 누구도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기 위하여 구금된 상태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나. 사복착용권

미결수용자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우된다면 당연히 그가 입고 있는 옷도 일반인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어야만 함(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 제 88조). 따라서 행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필요함.

"미결수용자의 복장은 사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관급복장을 요구하면 관급한다."

다. 벌칙규정의 신설

- 행형당국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피구금자에 대한 처우를 행형당국이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않는 경우는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그렇지 않으면 의무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해석

될 우려가 있음).

-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우선적으로 교정공무원이 피구금자의 청원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타인과의 면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는 행위등을 들 수 있음. 이 경우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개정안 ·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개정안과 다른 부분만 표시)
제1조(목적) 이 법 ----- "수형자" ----- ----- ----- "미결수용자" ----- -----	제1조의 2(인간존엄성의 존중 등)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u>국적</u> , <u>성별</u> , <u>종교</u> , <u>사상</u>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조(구분수용)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 교도소 및 구치소의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수용한다. ⑤ 교도소 · 소년교도소 · 구치소 · 지소(이하 "교도소 등" 이라한다)	제1조의 2(인간존엄성의 존중 등)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u>국적</u> , <u>성별</u> , <u>종교</u> , <u>사상</u>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③ 교도소 등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 2(교도소 등의 민간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교도소 등의 설립,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의 자격 및 권한, 시설 및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교도소등의 순회점검 등) ①----- -----교도소 등을----- ----- ② -----교도소등을----- ----- ③----- -----교도소등을----- -----	
제6조(청원) ① 수용자 ----- ----- ----- ----- ----- ②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청원서를 봉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현행과 동일) ④ 소장은 수용자의 청원을 저지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현행과 같음)	제6조 ①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직접 혹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변호사를 통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신입자의 수용등) ① ----- -- 교도소등 -----"신입자"-- ----- ② (현행과 같음) ③ -----출산한 유아를 교도소등의 안에서 양육할 것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전염병에 걸린 자의 분리) 다른 사람 ----- -----	
제11조(독거수용) ①-----, 다만, ----- ② 내지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	수정안
제12조(수용자의 이송) ----- -----교도소등을 -----	
제14조(강제력의 행사)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그 행위를 폭력으로 제지하거나 교도봉·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살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3. 도주하거나 하려고 할 때 4.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하려고 할 때 5.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② 강제력의 행사에 필요한 보안장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① ----- ----- 단, 실력행사(무기)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 경고를 발하여야 하고 수용자에게 최소한의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계구) ①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현행 제14조제2항과 같음) ③ 계구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모양과 규격·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무기의 사용)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내지 2. (현행과 동일) 3. 도주 또는 교도관에 대한 저항목적으로 다중이 소요하는 때 4. 내지 5. (현행과 동일)	제15조 ① ----- ----- 단, 실력행사(무기)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 경고를 발하여야 하고 수용자에게 최소한의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	수정안
② 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안(교도소등의 밖에서 작업 또는 호송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협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용자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수용자의 긴급이송등) ① -----교도소등의 안----- ② 다른 장소 -----불가능----- ③ -----24시간안----- -----교도소등-----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접견과 서신의 수발)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접견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 접견참여 및 접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접견)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단,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수용시설의 질서유지상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는한 그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수형자의 접견의 경우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허가를 해야 하며 특히 다음 열거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1)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2)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3) 본인의 일신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요한 용무를 위해 필요한 자 4) 수형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국의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이법과 다른 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없으며 변호인은 접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수형자와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와의 접견도 이를 준용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접견 혹은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접견의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접견의 방법과 제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의2(서신)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소신을 주고 받을 수 있다. ②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④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이 교부를 불허한 서신은 이를 폐기한다. 다만 폐기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석방할 때 본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⑥ 서신의 검열 및 서신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2(서신)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단, 미결 수용자의 경우는 수용시설의 질서유지상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그 서신의 교환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수행자의 서신교환의 경우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야 하며 특히 다음 열거의 사람과의 서신교환은 거부할 수 없다. 1)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2)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3) 본인의 일신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요한 용무를 위해 필요한 자 4) 수행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국의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소장은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신서를 열어 검열할 수 없다. 1) 법원, 법무부,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서신교환 2) 미결수용자로서 그 변호인과의 서신교환 3) 수행자로서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와의 서신교환 ④ 서신의 검열·발송 및 교부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이 교부를 불허한 서신은 그 이유를 수용자에게 문서로 고지하고 그 내용자체가 범죄행위의 증거물이 아닌 한, 보관하였다가 석방할 때 이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서신의 검열 및 서신의 제한에 관하여 위의 규정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전화통화) ① 소장은 수용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는 통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통화 허가의 범위, 통화내용 청취의 방법, 요금 부담 등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의 3(전화·전보의 이용)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전화하거나 전보를 보낼 수 있다. ② 전화의 경우에는 면회에 관한 규정을, 전보에 관한 경우에는 서신의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전화, 전보의 횟수, 시간 및 요금의 부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서신등의 영치) ① ----- -----, 다만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서신 등의 보관) 수용자에게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이를 보관할 수 있다. 단, 사방의 공간부족으로 그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자는 그 영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문서보관의 확인서를 교부해야 하며 수용자는 사후 그 영치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병원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를 교도소등의 밖에 있는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병원수용)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진료를 신청한 경우 그 질병의 종류와 정도 그리고 과거의 병력을 참작하여 의료상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질병이 당해 수용시설의 의료시설로는 적절한 의료기술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수용자를 외부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30조(임산부등) 임산부와 노쇠자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준한다.	제30조(임산부등) ----- ----- ② 수용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의 병원 또는 조산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2조(교육) ① ----- -----상응----- -----다만----- ② -----건전한 인격형성----- -----	③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자를 외부의 교육기관, 기업체 등에 통근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수정안
<p>제33조(신문·도서의 열람)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신문 또는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p>	<p>제33조(신문·도서의 열람) ① 수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공간된 도서 및 신문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제3자로부터 열람목적의 영치를 받을 수 있다. ② 소장은 도서 및 신문의 내용이 수용시설의 안전과 교화목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소장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수용시설은 법률도서를 포함한 서적을 갖춘 도서실을 설치하여 수용자의 독서의 편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열람 및 제한의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의 2(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청취) -----수용자-----</p>	
<p>제33조의 3(집필)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기타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2.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내용 ② 집필용구의 사용, 집필시간·장소, 작품의 영치 및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p>	<p>제33조의 3(문서도화의 작성) ① 수용자는 문서도화를 작성하거나 문학·학술 기타사항에 관한 집필을 할 수 있고 그 작성한 문서도화를 외부에 반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에 반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발신하는 신서에 준하여 그 내용의 검사와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문서도화의 작성과 외부반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휴일의 작업) ① ----- -----다만-----</p>	
<p>②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37조(작업의 면제) 수행자중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통고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수행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열외로 한다.</p>	

개정안	수정안
<p>제39조(작업수입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실적과 행형성적----- ③ ----- -----다만,-----</p>	
<p>제40조(위로금, 조위금) ① 수행자가 작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41조(휴대금품의 영치) ① ----- -----교도소등----- 다만, ----- ② ----- -----기간안에-----</p>	
<p>제42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p>	
<p>제43조(영치금품의 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③ ----- -----다만,-----</p>	
<p>제44조(분류, 처우 및 귀휴)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③ ----- 3분의 1 ----- -----행형성적----- -----1년중 7일----- ④ (현행과 같음)</p>	<p>제44조(분류, 처우 및 귀휴) ③ 소장은 1년이상 복역한 수행자로서 행형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1년에 7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 ④ 소장은 수행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가 중태 혹은 사망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현행④항은 5항으로.</p>

개정안	수정안
제45조(규율)	제45조(규율) 수용자의 규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제46조(징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p> <p>1. 내지 2. (현행과 같음) 3. 2월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4. 내지 5. (현행과 같음) (신설)</p> <p>③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해서 부과할 수 없으며 수용자의 규율위반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46조(징벌)</p> <p>②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1) 경고</p> <p>2) 1월 이내의 청원작업정지</p> <p>3) 1월 이내의 작업정지</p> <p>4) 1월 이내의 금치</p>
<p>제47조(징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교도소등 -----</p> <p>-----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이상의 교도관)중에서 -----</p>	<p>제47조(징벌위원회)</p> <p>③ 징벌대상자는 변호사를 징벌절차의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징벌대상자 또는 변호인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p> <p>④ 징벌을 위한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는 징벌에 유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p>
<p>제48조(징벌의 정지, 면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감경-----</p> <p>-----</p> <p>제48조의 2(징벌집행의 유예) ①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결정할 경우에 규율위반의 동기 및 정황, 행형성적, 누우치는 빛 등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2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p> <p>② 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중 당해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유예한 징벌을 즉시 집행한다.</p> <p>③ 수용자가 징벌집행을 유예받은 후 규율위반행위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징벌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p>	

개정안	수정안
<p>제51조(가석방심사) ① -----</p> <p>-----행형성적-----</p> <p>-----</p> <p>② -----</p> <p>-----</p> <p>행형성적-----</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4조(석방시기)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p>	
<p>제55조(피석방자의 수용)-----</p> <p>----- 교도소등-----</p> <p>-----</p>	
<p>제56조(귀가여비등) -----</p> <p>-----</p> <p>당해 교도소등-----</p> <p>-----</p>	
<p>제58조(사시체의 가장등) -----</p> <p>----- 사체-----</p> <p>-----가매장-----</p> <p>-----</p>	
<p>제59조(사체, 유골의 교부) 사체 또는 유골-----</p> <p>----- 다만,</p> <p>-----</p>	
<p>제60조(사체, 유골의 합장) 사체 또는 유골을 가매장 -----</p> <p>-----</p>	
<p>제61조(사체의 해부) 수용자의 사체는 -----</p> <p>-----</p> <p>-----</p> <p>-----</p>	

개정안	수정안
제61조(사체의 해부) 수용자의 사체는 ----- ----- -----	
제63조(참관금지) 미결수용자와 사형이 확정된 자가 수용된 거실-----	
제64조(미결수용자의 분리수용) 미결수용자--- 수용하고 상호접촉-----	
제65조(미결수용자의 이발) 미결수용자-----	
제67조(작업과 교회) ① 미결수용자----- -----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시행령) 이 법 ----- -----	

행형법 수정보충안 - 최정학

(1) 청원제도

- 청원을 법무부 장관과 교도위원회 양자에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청원취지서는 폐지한다.

제6조 (청원)

- ①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는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 법무부 장관 또는 교도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 ②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
- ③ 교도위원회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 ④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신입수용자에 대한 고지

- 교도소 등은 신입수용자에 대하여 행형법규상의 주요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서면과 구두로 고지하도록 한다.
- 또 이 서면을 수용거실과 작업장에 항상 게시토록 한다.

제8조의2 (신입 수용자에 대한 고지)

- ① 교도소 등의 장은 신입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접견과 서신의 수발에 관한 사항
 2. 물품의 급여와 자비부담에 관한 사항
 3. 위생과 의료에 관한 사항
 4. 종교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작업 및 작업수입에 관한 사항
 6. 제45조에 의한 규율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의한 징벌에 관한 사항
 8. 청원에 관한 사항
- ② 전항의 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서면과 구두로 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수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서면은 각 수용거실과 작업장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3) 재소자간 갈등 문제

- 재소자 간의 갈등에 대하여 교도소 등 당국이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규정을 둔다.

제11조 (독거수용)

- ③ 혼거수용의 경우에 교도소 등은 수용자간의 갈등이 없도록 순회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④ 작업장의 취업에 있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교도관 강제력 사용 및 징벌에 대한 제한

-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와 무기 사용 및 징벌부과에 대해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규정한다.

제14조

- ② 강제력의 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사전 경고를 발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또 수용자에게 최소한의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는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제15조

- ③ 무기의 사용에 관해서도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

③ 징벌은 그 대상행위를 억제하는데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징벌을 과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담배 등 기호식품의 허용

- 수용자의 자비부담으로 의류나 식량 뿐 아니라 담배 등의 기호식품도 허용되도록 한다.
-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외에는 모든 기호식품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의류 등의 자비부담)

- ① 수용자에게는 의류, 침구와 식량 및 담배 등 기호식품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자비부담의 의류, 침구와 식량 및 금지되는 기호식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단속 예외자 범위 확대

- 머리와 수염을 짧게 깎지 않아도 되는 수용자의 범위를 각각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자와 잔형기가 4월 이하인 자로 확대한다.

제23조 (이발과 면도)

... 다만 여자수형자와 1년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4월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신문·도서 열람의 제한 규정 삭제

- 신문이나 도서의 구매, 열람, 외부로부터의 영치에 대한 모든 제한을 폐지한다.

제33조 (신문·도서의 열람)

② 삭제

(8) 작업수입의 관리 개선

- 가족 부고시에 작업면제 기간을 현실에 맞춰 축소한다.
- 작업수입이 수용자와 교도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한다.

제37조 (작업의 면제)

수형자 중 부모·처자 또는 형제의 부고를 받은 자는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제39조 (작업수입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단 그 1/3은 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한, 또 1/3은 교도관의 처우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한다. 처우향상을 위한 기금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교도위원회의 설치

- 청원과 징벌, 가석방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교도위원회를 설치한다.
- 교도위원회의 구성은 교도소 등의 장을 위원장으로하고 교도관 대표와 변호사와 학자를 포함하는 시민대표로 이루어진다.
- 교도위원회에 관계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준다.
- 현행 징벌위원회와 가석방위원회는 폐지한다.

제47조 (징벌위원회)

삭제

교도위원회의 신설(현행 제11장은 삭제)

제11장 교도위원회

제49조 (교도위원회)

- ① 각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자의 청원과 징벌, 가석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교도위원회를 둔다.
- ② 교도위원회는 당해 교도소 등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직급별 대표자를 포함하는 교도관 3인과 변호사 및 학계 대표 3인, 거처한 약식을 갖춘 시민대표 2인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교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제46조에 의한 수용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2. 제46조에 의한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
 3. 수용자의 가석방 신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도소 등의 행정 전반에 관한 자문사항
- ④ 교도위원회의 구성·운영·사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심사)

- ① 교도위원회는 교도소 등이 제출한 심사자료에 의하여 전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 ② 교도위원회는 전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수용자 및 기타 관계자를 소환·심문할 수 있다.
- ③ 교도관과 수용자 및 기타 관계자는 전항에 의한 교도위원회의 조사와 소환·심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51조 (의결)

교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2조 (가석방의 신청과 허가) - 제12장의 첫 조문으로(12장의 제목을 가석방 및 석방으로)

- ① 교도위원회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명, 형기, 수형중의 행장, 가석방 후의 생활과 보호관계, 재범 우려유무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제49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가석방의 신청여부를 결정한다.
- ② 교도위원회가 가석방의 신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전항에 의한 가석방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10) 석방제도의 개선

- 권한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을 포함한 모든 석방은 그 서류도달 후 6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석방집행시간을 단축한다.
- 형기종료에 의한 석방도 형기종료일 정오까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피석방자에게 당해 교도소 등에서 여비와 의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54조 (석방)

-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권한있는 자의 명령, 감형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도달후 6시간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③ 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일 정오까지 행하여야 한다.

제56조 (귀가여비등)

... 여비 또는 의류를 당해 교도소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기타

민영화 문제, 사형수 별개 수용, 제38조 삭제, 교도관 개정안 제67조(미결수의 식량 등 자비부담)

원형 행정법	범무부 개정안	수정안
<p>제6條 (請願) ①受刑者 또는 未決收容者(이하 "收容者"라 한다)는 그處遇에 對하여 不服이 있을 때에는 法務部長官 또는 巡廻點檢公務員에게 請願할 수 있다.</p> <p>②收容者가 法務部長官에게 請願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당해 所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矯導官은 請願書를 閉封하지 못한다.</p> <p>③巡廻點檢公務員에 대한 請願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할 수 있다. 巡廻點檢公務員이 口述에 의한 請願을 聽取하는 때에는 矯導官을 참여시키지 못한다.</p> <p>④請願에 대한 決定은 文書로서 하여야 하며 그 決定書는 당해 所長이 지체없이 이를 請願인에게 傳達하여야 한다.</p>	<p>제6조(청원)①수용자-----</p> <p>-----</p> <p>-----</p> <p>-----</p>	<p>제6조(청원) ①수행자 및 미결수행자 교도위원회의 위원인 수행자(이하 "수행자등"이라 한다)는 수행자에 대한 처우, 행정제도의 운영에 관련되는 제반 사항에 관하여 범무부장관 또는 청원담당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p> <p>② 집행의 수행자 및 미결수행자는 직접 또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변호사를 통하여 청원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집행의 청원담당공무원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범무부장관이 그 임무를 맡겨 특별히 임명한 공무원으로 한다.</p> <p>④수용자등이 범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한 후에 봉합하여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p> <p>⑤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p> <p>⑥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p> <p>⑦범무부장관은 수행자등의 청원 및 제6조의2의 고충처리담당하기 위한 "제소처청원·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p> <p>⑧수행자등의 청원의 처리절차 및 집행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1항, 제2항
범무부장관
수행자등 청원담당공무원
S2h
V
교도위원회의

< 중요 정션별 행정법 대비표 >

원형 행정법	범무부 개정안
<p>제5條 (矯導所等의 巡廻點檢等) ①法務部長官은 矯導所, 少年矯導所 및 拘置所를 巡廻點檢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巡廻點檢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 1. 5></p> <p>②判事의 檢事는 矯導所, 少年矯導所 또는 拘置所를 隨時로 視察할 수 있다.</p> <p>③第2項 以外の 者로서 學術研究 其他 正當한 理由로 矯導所, 少年矯導所를 參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理由를 明示하여 當該所長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p>	<p>제4조의 2(교도소 등의 민간위탁)</p> <p>①범무부장관은 교도소 등의 설립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위탁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의 자격 및 권한, 시설 및 수용자의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원행 행정법	법무부 개정안	수정안(2)
<p>第8條 (新入者の收容等) ①收容者로서 矯導所, 少年矯導所 또는 拘留所에 新入하는 者(以下 新入者라 한다)에 對하여는 執行指揮書 및 裁判書 其他 適法한 書類를 調査한 後 收容한다. <改正 95.1.5></p> <p>②所長은 新入者에 대하여 지체없이 健康診斷을 하게 하여야 한다. <新設 95.1.5></p> <p>③新入의 女子가 所生乳兒의 帶同을 申請한 때에는 相當한 理由가 있는 境遇에 限하여 生後 18月에 이르기까지 當該所長이 이를 許可할 수 있다.</p> <p>④收容증에 出生한 乳兒에 對하여도 第3項에 準한다. <改正 95.1.5></p> <p>第9條 (傳染病에 걸린 者의 隔離) 他人에게 傳染의 念慮가 있는 傳染病에 걸린 者는 收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5.1.5></p>	<p>제8조(신입자의 수용 등)①-----교도소등----- -----"신입자"-----</p> <p>-----출산한 유아를 교도소 등의 안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p> <p>-----</p> <p>④(원행과 같음)</p> <p>제9조(전염병에 걸린 자의 분리) 다-----사람-----</p>	<p>제8조의2(신입수용자에 대한 고지)①교도소등의 장은 신입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접견과 서신의 수발에 관한 사항 2. 물품의 급여와 자기부담에 관한 사항 3. 위생과 의료에 관한 사항 4. 종교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작업 및 작업수위에 관한 사항 6. 제45조에 의한 규율에 관한 사항 7. 제46조의 징벌에 관한 사항 8. 청원에 관한 사항 <p>②전항의 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서면과 구두로 행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수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서면은 각 수용기실과 작업장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p>

4

원행 행정법	법무부 개정안	수정안
		<p>제6조의2(고충처리)① 수행자, 수행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형제자매, 교도위원회의 위원인 수행자는 해당 교도소등의 운영 및 수행지에 처우에 관하여 교도위원회를 통하여 또는 직접 교도소등의 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소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즉시 이를 교도위원회에 알린다.</p> <p>③ 소장은 접수된 고충민원의 신청자가 당해 고충민원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거나 당해 고충민원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p> <p>④ 소장은 고충민원의 내용이 당해 교도소등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린다.</p> <p>⑤ 소장은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교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p> <p>⑥ 소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알린다.</p> <p>⑦ 소장은 전항의 수용자등의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임무를 당해 교도소등의 부소장 또는 파장 이상의 교도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⑧ 신청인이 전항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때에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불복을 제기한다.</p> <p>⑨ 신청인은 법무부장관 또는 제6조 제7항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원행 행정법	법무부 개정안	수정안(2)
<p>第15條 (武器의 使用) ①收容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矯導官은 武器를 使用할 수 있다.</p> <p>1. 矯導官에 對하여 暴行 또는 脅迫을 하거나 하려고 하여 事態가 危險하다고 認定되는 때</p> <p>2. 暴行 또는 脅迫에 使用할 危險物을 所持하고 投棄命수에 服從하지 아니할 때</p> <p>3. 逃走할 目的으로 多衆이 騷擾하는 때</p> <p>4. 逃走를 企圖하는 者가 制止에 不應하거나 그 計劃을 繼續하는 때</p> <p>5.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 以外에 人命, 身體, 建物 其他 施設과 器械에 對한 危險을 防止하기 爲하여 緊急하다고 認定되는 때</p> <p>②矯導官은 矯導所·少年矯導所 또는 拘留所안(矯導所·少年矯導所 또는 拘留所밖에서의 作業 또는 護送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기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에 對한 防護, 收容者에 對한 奪取의 阻止, 建物 기타 施設과 武器에 對한 危險防止를 爲하여 緊急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收容者 의의 者에 對하여도 武器를 使用할 수 있다.</p>	<p>제15조(무기의 사용)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p> <p>1. 내지 2.(원행과 동일)</p> <p>3. 도주 또는 교도관에 대한 저항목적으로 다중이 소요하는 때</p> <p>4. 내지 5. (원행과 동일)</p>	<p>제15조(무기의 사용) ①(개정안과 같음)</p> <p>②무기의 사용에 관해서도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원행 행정법	법무부 개정안	수정안
<p>第14條 (戒具) ①收容者의 逃走, 暴行, 騷擾 또는 自殺의 防止 其他 必要한 境遇에는 戒具를 使用할 수 있다.</p> <p>②戒具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p> <p>1. 捕繩</p> <p>2. 手匣</p> <p>3. 사슬</p> <p>4. 顔面 保護具</p> <p>③戒具의 모양과 規格·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長官이 정한다.</p>	<p>제14조(강제력의 행사) ①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안에서 그 행위를 폭력으로 제지하거나 교도봉·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p> <p>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p> <p>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p> <p>3. 도주하거나 하려고 할 때</p> <p>4.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하려고 할 때</p> <p>5.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p> <p>②강제력의 행사에 필요한 보안장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p>	<p>제14조(강제력의 행사)①(개정안과 동일)</p> <p>②강제력의 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사전 경고를 발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또 수용자에게 최소한의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는 방법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p>

원행 행위법	법무부 개정안	수정안(3)
<p>第33條 (圖書閱覽) 收容者が圖書の閱覽を申請する 때에는 特別不適當하다고 認定되는事由が 없는 限 當該所長の 許可하여야 한다.</p>	<p>제33조(신문·도서의 열람)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신문 또는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②소장은 신문 또는 도서의 내용이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문제가 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의 일부를 삭제할 수 있다.</p>	<p>제33조(신문·도서의 열람) ①수용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공간된 도서 및 신문의 구매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제3자로부터 열람목적의 영치를 받을 수 있다. ②소장은 도서 및 신문의 내용이 소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야기하거나 교화목적상 특히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소장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수용시설은 법률도서를 포함한 서적을 갖춘 도서실을 설치하여 수용자의 독서의 편의에 제공하여야 한다.</p>
<p>第33條의2 (라디오와 텔레비전 視聴) 所長은 受刑者에게 하거나 文學· 학술 기타사항에 관한 摺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內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교도소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內容 2. 기타 教化상 부적당한 內容 ②摺필요구의 사용, 摺필시간· 장소, 작품의 영치 및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p>	<p>제33조의2(라디오와 텔레비전의 시청)----수용자</p>	
<p>第18條 (接見과 書信受發) ①收容 者は 所長の 許可를 받아 他人과 接見하거나 書信을 受發할 수 있다. ②收容者の 接見과 書信受發은 教化 또는 處遇上 특히 不適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③收容者の 接見과 書信受發은 備導官의 참여와 檢閱을 요한다. 다만,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辯護人接見의 경우를 제외한다.</p>	<p>제18조(접견과 서신의 수발)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단,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수용시설의 질서유지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를 주지 않는 한 그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②수용자의 접견의 경우 소장은 교화 또는 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야하며 특히 다음 열거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1.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2.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3. 본인의 일신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요한 용무를 위해 필요한 자 4. 수용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국의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이 법과 다른 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없으며 변호인은 접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수형자와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와의 접견도 이를 준용한다. ④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 접견 혹은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접견의 경우를 제외한다. ⑤접견의 방법과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접견)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단,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수용시설의 질서유지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를 주지 않는 한 그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②수용자의 접견의 경우 소장은 교화 또는 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야하며 특히 다음 열거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1.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2.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3. 본인의 일신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요한 용무를 위해 필요한 자 4. 수용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국의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이 법과 다른 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없으며 변호인은 접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수형자와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와의 접견도 이를 준용한다. ④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 접견 혹은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접견의 경우를 제외한다. ⑤접견의 방법과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접견, 書信.

원행 행위법	법무부 개정안	수정안(1)
<p>第18條 (接見과 書信受發) ①收容 者は 所長の 許可를 받아 他人과 接見하거나 書信을 受發할 수 있다. ②收容者の 接見과 書信受發은 教化 또는 處遇上 특히 不適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許可하여야 한다. ③收容者の 接見과 書信受發은 備導官의 참여와 檢閱을 요한다. 다만,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辯護人接見의 경우를 제외한다.</p>	<p>제18조(접견과 서신의 수발)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단,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수용시설의 질서유지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②수용자의 접견의 경우 소장은 교화 또는 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야하며 특히 다음 열거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1.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2.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3. 본인의 일신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요한 용무를 위해 필요한 자 4. 수용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국의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이 법과 다른 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없으며 변호인은 접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수형자와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와의 접견도 이를 준용한다. ④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 접견 혹은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접견의 경우를 제외한다. ⑤접견의 방법과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접견) ①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단,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수용시설의 질서유지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를 주지 않는 한 그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②수용자의 접견의 경우 소장은 교화 또는 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야하며 특히 다음 열거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1.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2. 변호사법 제3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3. 본인의 일신상, 법률상 또는 업무상 중요한 용무를 위해 필요한 자 4. 수용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국의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이 법과 다른 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제한할 수 없으며 변호인은 접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수형자와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와의 접견도 이를 준용한다. ④소장은 수용자의 접견에 교도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 접견 혹은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접견의 경우를 제외한다. ⑤접견의 방법과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헌법 행정법	법무부 개정안	수정안(3)
<p>第47條 (懲罰委員會) ①懲罰은 懲罰委員會의 議決로써 定한다.</p> <p>②懲罰委員會는 3人以上 5人以内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委員長은 當該所長이 되고 委員은 委員長이 당해 矯導所·少年矯導所 또는 拘置所의 副所長과 課長中에서 任命한다.</p>	<p>제47조(징벌위원회) ①(헌행과 같음) ②-----교도소등----- -----과장(지소의 경우 7급이상 교도관)중에서-----</p>	<p>제47조(징벌위원회) 제47조(징벌위원회) ①(헌행과 같음) ②----- -----다만 1인 이상(위원이 3인인 경우 1인)의 위원은 반드시 전원적 교도관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③징벌위원회의 위원중 전원적 교도관이 아닌 자는 당해 교도소 등의 교화위원 또는 징벌위원회 위원으로 자원한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p>
<p>第48條 (懲罰의 停止, 免除) ①懲罰을 받은 者로서 疾病 其他 事由가 있을 때에는 所長은 그 執行을 一時 停止할 수 있다.</p> <p>②所長은 懲罰을 받은 者가 너우치는 및이 뚜렷한 때에는 懲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懲罰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p>	<p>제48조(징벌의 징지, 면제) ①(헌행과 같음) ②-----감경-----</p>	<p>④징벌대상자는 다른 수용자, 교도관, 교회·교회에 관계하는 종교인 또는 일반인, 변호사를 징벌절차의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징벌대상자 또는 변호인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⑤징벌을 위한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에게 징벌에 유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p>

헌법 행정법	법무부 개정안	수정안(3)
<p>第45條 (規律) 收容者의 規律에 關한事項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p> <p>第46條 (懲罰) ①收容者가 規律을 違反한 때에는 懲罰에 處한다.</p> <p>②懲罰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警告 2. 1月이내의 圖書閱覽 제한 3. 請願作業의 징지 4. 作業賞與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削減 5. 2月이내의 禁履 <p>③懲罰을 科함에 있어서 必要한 基準은 法務部長官이 定한다.</p>	<p>제46조(징벌) ①(헌행과 같음) ②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지 2. (헌행과 같음) 3.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징지 4. 내지 5. (헌행과 같음) ③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해서 부과할 수 없으면 수용자의 규율위반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④(헌행과 같음)</p>	<p>제46조(징벌) ②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15일 이내의 사신교환, 점견을 제외한 처우상의 불이익 3. 벌금 4.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5. 15일 이내의 참여부과 6. 수용거실의 변경 7. 30일 이내의 청원작업징지 8. 30일 이내의 작업정지 9. 작업상여금의 일부 삭감. 10. 30일 이내의 금치 ③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해서 부과할 수 없으면 수용자의 규율위반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④징벌을 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법무부의 행형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수신: 법무부 장관

[참조: 교정과장]

발신: 7개 인권단체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대표 박이섭-목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최영도-변호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박병섭-교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임기란-인권운동가)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대표 김진균-교수)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장 김녕-교수)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인권운동가)

간사단체: 인권운동사랑방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 / 전화 741-5363. 전송 741-5364.

(연락담당자: 서준식, 고근예)]

제목: 법무부의 행형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7개 인권단체 의견서

날짜: 1999년 6월 18일

우리 7개 인권단체들은 귀부가 마련하신 행형법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법무부 공고 제 1999-17)을 각자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한 차례의 합동 토론회 (1999년 6월 16일)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이 공동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부디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이라는 대명제를 염두에 두시어 세밀히 검토하신 후 귀부가 이미 마련하신 법률안을 수정하기 위한 비중 있는 자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행형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7개 인권단체

의견

1. 총평

[1]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우리는 우선 귀부가 행형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구태의연의 '밀행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사회 각분야에서 민주적 개혁이 기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인권단체들 역시 귀부의 행형법 개정작업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귀부는 교정국 및 교정국이 선택한 몇몇 법률가들만으로 개정법률안을 작성했으며, 공청회를 통하여 여론을 널리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국무회의 상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부가 주요 내용만을 공개하고 법안 그 자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강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소개된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이 수형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다면 미리 법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안을 공개하여주시고 한 차례라도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미결수와 기결수 처우를 체계적으로 구별해야 한다

우리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인 미결 수용자가 기결 수용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최대한 일반 사회인의 생활에 접근하는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는 법률에는 최소한 따로 미결 수용자의 처우를 규정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부가 공개하신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건대 이러한 노력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여전히 미결 수용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남기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더 과감한 수용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귀부는 개정법률안에서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는 일단 귀부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귀부가 마련하신 처우 개선안은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 통화 허용', '집필' 등은 이미 교정시설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법제화 한 데 지나지 않으며, '청원권'도 크게 실효성이 부여된

개선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교도관의 접견 참여와 서신 검열이 필요적 사항에서 임의적 사항으로 변했다고는 해도 그것이 실지 운영과정에서 수용자의 인권이 얼마나 개선되는 것인지는 전혀 미지수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률을 정비한다는 차원이 아닌, 교정시설 내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 개정을 원합니다. 좀 더 과감한 처우 개선책이 아쉽습니다.

[4] 사고의 전환과 그에 따르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 행형법이 일본제국주가 우리 민족에 강요한 법제의 테두리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그 테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귀부가 공개하신 주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짐작이 가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런 법제를 가지고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은 결코 충분히 보장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일의 과제로서 제안하건대, 행형법이라는 권위주의적인 명칭의 변경을 포함하여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모색해주시어 완전히 다른 교도행정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체입법을 진지하게 구상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2. 각 부분에 대한 의견

[1] 인권존중 선언

⇒ 강한 조건부 찬성

□ 의견

개정안에는 '사상'에 의한 차별금지를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이유

인간존엄과 차별금지 등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선언적으로 명시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차별이 이루어져 있는 영역 중의 하나가 '사상'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 '사상'에 의한 차별을 명기하지 않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차별금지 규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후일 반드시 분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는 바 이번 기회에 이 분란의 소지를 없애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2] 민간 위탁

⇒ 강한 반대

□ 의견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이유

① 민영교도소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 과정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장·단점도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법제화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특히 작년 '양지마을 사건'에서 극명히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비리가 판을 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을 감안할 때 민영교도소의 선부른 설치는 나중에 커다란 사회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도소 민간위탁을 가능케 하는 근거조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하며, 이후 공청회를 비롯한 공개적인 논의과정을 거듭하여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이 있는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② 교도소의 과밀화 해소방안은 민영교도소를 신설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보석의 확대 등으로 교도소 수용인원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 당장 실행되어야 하며, 시설을 늘린다 해도 일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민영교도소 방안은 (만약 있을 수 있다 해도) 순전히 교육상 효과라는 면에서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청원권

⇒ 반대 (근본적 보완책 필요)

□ 의견

개정안은 현행 행형법과 문구상 차이 외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① 청원서를 쓰기 위하여 따로 집필보고전을 낼 필요가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 재청원을 감사원장 앞으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낼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청원결과를 청원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야 한다.

④ 교도관에 의한 청원권 행사 방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벌칙규정이 있어야 한다.

■ 이유

① 교도관이 수용자의 청원권을 방해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집필보고전을 내주지 않는 것이라는 보고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수용자가 청원권을 행사할 의

사를 표명할 때 집필보고전 없이 자동적으로 집필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와 관련, 수용자가 교도관을 고소하거나 고발할 때도 집필보고전 없이 고소·고발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②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의 감독책임자라는 점에서 청원이 일방적으로 교도관 입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청원의 최종심을 법무부 외 부서에서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생략

④청원권 방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사실은 교도관의 청원권을 방해에 대한 아무런 방비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교도관의 청원권 방해를 묵인하는 과거의 통폐를 되풀이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4] 고지사항

⇒ 미흡 (보완 필요)

□ 의견

①신입 수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분하여 각각 구체화 시켜 수용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거실에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②교도관은 수용자가 그 권리 행사와 관련, 설명을 요구할 때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③소장은 행형관계 법령을 수용자 열람용으로 교도소내에 비치해야 하며 수용자는 필요한 경우 항상 법령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 이유 -생략

[5] 계구 사용

⇒ 찬성, 그러나 보완 필요

□ 의견

징벌수단으로 계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①계구 사용의 조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즉 계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통을 줄 목적으로 계구사용을 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해야 하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②계구를 남용하는 교도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 이유

교정시설에서 일반적으로 계구가 쾌ష한 재소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 개정 법률안으로써는 교도관에 의한 계구 남용을 부분적으로밖에 통제하지 못한다.

[6] 강제력의 행사

⇒ 찬성, 그러나 보완이 필요

□ 의견

보안장비 (교도봉, 가스분사기, 최루탄)를 특정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보안장비의 사용은 엄격하게 한정시켜야하며, 이 역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용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를 어긴 교도관에 대하여 강도 높은 형사처벌을 과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 이유 -생략

[7] 무기사용

⇒ 대폭 수정 필요

□ 의견

①무기(총기)의 사용은 다중의 힘에 의한 폭동의 경우와 수용자가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를 공격할 경우에만 엄격히 한정하여야 한다.

②무기 사용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신체적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③위의 원칙을 어기고 무기를 남용한 교도관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

■ 이유 -생략

[8] 접견·서신·전화통화

⇒ 전면적 재검토 필요

□ 의견

①접견

●1안: 미결 수용자와 기결 수용자를 구분하여

미결수는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를 이유로 접견을 제한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결수도 가족과 변호사의 접견은 제한해서는 안된다.

●2안: 모든 수용자(기결, 미결)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수용자에게 접견을 허용하되 범죄의 모의, 은폐, 탈옥 등 구체적 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소장이 접견을 불허 할 수 있게 한다.

②서신

변호인과 공무소와의 서신교환은 검열할 수 없게 해야한다.

불허된 서신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수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소장은 그것을 보관했다가 석방시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③전화통화

전화 통화가 수용자의 권리임을 명시해야 한다. (“수용자는……할 수 있다”)

전화와 함께 전보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도관의 전화 청취를 면회 입회나 서신 검열에 준하여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

미결 수용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특별한 제한없이 누구나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유 -생략

[9] 서신 영치

⇒ 반대

□ 의견

교부된 서신 및 문서는 거실에서 보유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영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이유 -생략

[10] 병원 이송

⇒ 대폭 수정, 보완

□ 의견

‘소장이 ~이송할 수 있다’가 아니라 ‘수용자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경, 수용자의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수용자의 자비 부담 치료인 만큼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수용자는 시설보호대상자 기준에 준해 외부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유 -생략

[11] 신문·도서의 열람

⇒ 반대 (크게 미흡)

□ 의견

개정안은 기존의 도서 열람에 관한 규정보다 수용자의 도서열람을 제한 하고 있다. 신문과 공간되는 도서, TV, 라디오는 완전 개방해야 한다.

■ 이유

우리 사회 언론 출판계의 공신력을 믿어야 한다. 기결수는 재사회화를 위하여, 미결수는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이들 매체에 대한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

[12] 집필

⇒ 찬성, 그러나 크게 보완 필요

□ 의견

집필 내용을 제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내용의 집필이 허용되어야 한다.

집필 한 문서를 수용자가 구금 생활 중에 외부로 반출하려 할 때 서신 검열에 준한 검열을 거친 후 반출할 수 있도록 한다.

집필한 문서를 수용자가 석방될 때 외부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검열해서는 안된다.

■ 이유 -생략

[13] 징벌

⇒ 전면 수정 필요

□ 의견

①징벌절차

● 징벌 대상자는 징벌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징벌 사유를 고지받으며, 자신을 변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징벌 대상자는 교도관, 교회/교화에 관계하는 종교인, 또는 일반인, 변호사를 징벌절차에 변호인으로서 선임할 수 있어야 하며, 징벌 대상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며 변호인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재소자를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

● 징벌을 위한 조사기간 중에 징벌대상자에게 징벌에 유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②징벌구제 절차

● 징벌 결정이후 최소한 1주일 이내에 이에 불복할 수 있고, 위 불복절차를 거쳐 확정될 때에만 징벌을 집행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불복을 심사하는 기관에 대하여 인권단체들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음)

③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에서 "1월 이내의 신문 도서 열람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

징벌의 종류에서 2월 이내로 되어 있는 청원작업 정지와 금치를 1월 이내로 수정해야 한다.

■ 이유

가석방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징벌 절차에 신중을 기할 뿐 아니라 그 구제절차도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징벌사유가 발생하여 징벌 위원회에서 징벌결정을 하면 바로 집행이 되는데, 징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법원 등에 구제절차를 밟고 싶어도 이미 집행된 징벌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심사조차 못 받고 있다.

[부기] 이른바 '건달징역'에 대하여

교정시설 내에는 이른바 '건달징역'이라는 심각한 병폐가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등이 뚜렷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교도관의 묵인 하에 법에도 없는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약한 재소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출소자들의 제보를 우리는 수없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건달징역'의 방지는 원래 행형법에 규정할 성격의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인권단체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정 당국이 이 '건달징역'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면 이를 한시적으로라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건달징역'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

행 형 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법은 징역형구금형 및 노역장유치와구류형을 받은자(이하수형자라 한다)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국민사상과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을 실시하여 사회에복귀하게하며 아울러형사피의자또는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자(이하미결수용자라 한다)의수용에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교도소등의설치) 1교도소와구치소를 엄격히구분한다
2교도소에는만 20세이상의수형자를수용한다
3소년교도소에는만 20세미만의수형자를수용한다
4미결수는 구치소에서수용한다
5교도소는 1년 이상의수형자만수용한다
6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의명칭위치및직제에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3조 (수용)성년과소년을분리수용한다

제 4조 (이성수용자의격리)남자와여자는격리수용한다

제 5조 고층심사위원회의설치 1법무부장관은교도소,소년교도소및구치소에고층심사위원회를설치한다
2고층심사위원회는각소에 1심각청에 2심교정규에 3심 3불복이있을시는상급심에항고할수있다

제 6조 (정원)수형자는처우에대하여불복이있을때에는 법무부장관또는고층심사위원회에청원할수있다

제 7조 (집무규칙)교도관의집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무부장관이정한다

제 2 장 수 용

제 8조 (신입자의수용등) 1수형자또는미결수용자로서교도소,소년교도소또는구치소에신입하는자(이하신입자라 한다)에대하여는 집행지휘서 및 재판서기타적법한서류를조사한후수용한다
2신입의여자가소생유아의대동을신청한때에는 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생후 24월에이루기까지당해소장이이름허가할수있다
3수형중에출생한유아에대하여도제 2항에준한다

제 9조 (전염병리병자의격리) 타인에게전염의염려가있는전염병리병자는수용하지 아니할수있다

제 10조 (신체검사등) 1신입자에대하여신체,의류를검사하고지문을채취하며 사진을촬영할수있다
2수형중의자에대하여도당해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 신체,의류를검사하고지문을채취하며 사진을촬영할수있다

- 제 11조 (독거수용) 1수형자는 독거수용한다 단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할수있다
 소년수는 꼭 독거수용한다
 2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형자의 형기, 죄질, 성격, 범수, 연령, 경력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수용한다
 3작업장의 취업에 있어서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2조 (수형자의 이송) 수형자의 수용, 작업,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다른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이송할수있다
- 제 13조 (사형수의 수용) 사형의 선고 받은 자는 정송특수교도소에 수용한다

제 3 장 계 호

제 14조 (계 구) 수형자의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수있다

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승
2. 수갑

제 15조 (무기의 사용) 1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무기를 사용할수있다
 1교도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하려고 하여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2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을 소지하고 그 무기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
 3도주할 목적으로 다중이 소요하는 때
 4도주를 기도하는 자가 제지에 불응하거나 그 계획을 계속하는 때
 5제 1호 내지 제 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인명, 신체, 건물
 기타 시설과 기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6교도관은 교도소내(교도소외에서의 작업 또는 호송 중인 경우 포함)
 에서 자기가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
 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수있다.

제 16조 (수용자의 긴급이송 등)

- 1소장 또는 구치소의장은 천재지변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교도소, 소년교도
 구치소내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용자를 타처에
 이송할수있다.
- 2타처에의 이송이 불가능할 때는 일시적 방할수있다
- 3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석방후 24시간 내에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또는 최근지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 4제 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형법 제 145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 17조 (도주수용자의 체포)

수형자가 도주한 때에는 즉시 검찰에 통보한다

제 4 장 접견 과 서신

제 18조 (접견과 서신의 수발)

- 1수형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할수있다
- 2수형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참여 또는 검열을 요한다
- 3접견참여, 서신의 검열 및 접견과 서신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9조 (필기도구의 지급)

필기도구(볼펜)는 자유스럽게 사용한다

제 5 장 급 여

제 20조 (급여)

- 1수형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침구를 급여한다
- 2의류와 침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수형자에게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식량을 급여한다
- 4식량급여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 21조 (의류 등의 자변)

- 1수형자에게는 필요한 경우에 의류, 침구, 식량의 자변을 허가할수있다
- 2자변의 의류, 침구의 식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위생 과 의료

제 22조 (두발등의 단삭) 수형자의 두발은 단삭한다 단 여자수형자와 6월 이하의 형을
 받은 자와 잔형기가 4월 이하인 자는 예외로 한다.

제 23조 (은등) 소장은 수형자에게 건강에 필요한 운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 24조 (전염병 예방) 소장은 수형자에게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5조 (병실수용) 질병에 걸린 수형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 26조 (격리수용) 소장은 전염병에 걸린 수형자에 대하여 다른 수용자와
 격리수용하여야 한다

제 27조 (자비치료) 수형자가 자비로써 보조 치료를 원할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할수있다.

제 28조 (병원수용)

- 1소내에서 수형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소장은 소외의 다른 병원에
 이송할수있다.
- 2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한다.

제 29조 (임부 등) 임부, 산부와 고령자는 리병자에 준한다.

제 30조 (병원) 1교정병원을 신설한다

2교정병원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장 교육 과 교회

- 제 31조 (교회) 수형자가 그가 신봉하고 있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특별교회를 청원할 때에는 당해소장은 그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할수있다.
- 제 32조 (교육) 1 무교육자 또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정도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단 심신미약자 또는 교령자에 대하여는 예외로한다.
2 소장은 수형자의 인격도야와 개과전선을 추진시키고 심신단련과 기술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수있다
- 제 33조 (도서열독) 수형자가 도서의 열독을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한다.
- 제 34조 (교육규정) 교육의 과목, 시간과 도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 8 장 작 업

- 제 35조 (작업)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과한다.
- 제 36조 (휴일의작업) 1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공휴일에는 작업을 과하지 아니한다 단 취사, 청소, 간호, 경리 기타특히필요한 작업은 예외로한다
2 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 37조 (작업의면제) 수형자중 부모, 처자 또는 형제의 부고를 받은자는 3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 제 38조 (작업수입) 1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한다
2 수형자에게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의 종류 성적과 행장 기타사정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수있다.
3 제2항의 작업상여금은 석방할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또는 교회상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방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수있다.
- 제 39조 (위로금, 조위금)
1 수형자가 취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불구자가 된 때에는 그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해야한다.
2 위로금은 석방할때 본인에게, 조위금은 그상속인에게 각각 지급한다

제 9 장 영 치

- 제 40조 (휴대금품의영치)
1 수형자의 휴대금품은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에 영치한다 단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예외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수있다
- 제 41조 (수형자에 대한금품교부)
1 수형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소장은 이를 허가하여야한다.
2 소장은 수형자에게 송부된 금품으로써 본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그송부인에게 환부한다

3 소장은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송부인 또는 그송부인의 주소가 불명한 그물품을 공고하여야하며 공고한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 없을 때에는 그금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할수있다

제 42조 (영치금품의환부)

- 1 영치금품은 석방할 때에는 본인에게 환부한다
- 2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한다 단 사망후 1년을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 3 도주자의 유류금품은 청구에 의하여 본인이나 직계의 존속이나 비속에게 교부한다 단 도주후 1년이 경과하여도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제 10 장 분류 와 처우

제 43조 (분류, 처우 및 귀휴)

- 1 소장은 수형자를 개별적으로 분류심사하여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여야한다
- 2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개과의정상이 특히 현저하며 행장이 우수한 때에는 형기간중 3주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할수있다 귀휴기간은 형집행기관에 산입한다
- 3 귀휴기간은 형기 5년이하는 3주 10년이하는 6주 15년이하는 9주 20년이하는 12주 의귀휴를 줄수있다

제 44조 (규율) 수형자의 규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 45조 (징벌) 1 수형자가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에 처한다

- 2 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운동금지
3) 2월 이내의 금치

3 징벌을 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 46조 (징벌위원회) 1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한다

- 2 징벌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소내 부소장과 과장중에서 임명하고 각직급에서 2명을 위원으로한다

제 47조 (징벌의정지, 면제)

- 1 징벌을 받은 자로서 질병 기타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집행을 일시정지할수있다
- 2 소장은 징벌을 받은 자가 개건의정이 현저한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수있다

제 11 장 가 석 방

제 48조 (가석방) 형법제 72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을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하게 하기 위하여 교도소와 소년교도소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제 49조 (가석방심사위원회)

- 1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판사 검사 또는 사회명망가중에서 위촉하며 담당직원의 의사를 적극반영하여야한다

- 제 50조 (가석방구신) 2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가석방위원회가 가석방구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명, 형기, 수형종의 행장, 가석방후의 생활과 보호관계, 재범의 우려유무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2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구신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하여야 한다
- 제 51조 (가석방허가) 법무부장관은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의 구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한다

제 12 장 석 방

- 제 52조 (석방) 수형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소장이 이를 행한다
- 제 53조 (석방) 1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 감형에 의한 석방은 그 서류도달후 6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2 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일 12시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 제 54조 (피석방자의 수용)
 1 피석방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귀가하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내에 수용할 수 있다
- 제 55조 (귀가여비등)
 피석방자가 귀가여비 또는 의류를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여비 또는 의류를 당해소에서 대여할 수 있다

제 13 장 사형의 집행 및 사망

- ☞ 사형제도는 폐지하기를 바라며 단 사형제도가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사상범(양심범)은 폐지한다
- 제 56조 (사형의 집행) 1 사형은 청송특수교도소내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2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공휴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 제 57조 (시체의 가장) 수형자가 사망한 때에 그의 친족 또는 친지가 그 시체를 주시인수 하지 아니하면 이를 가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화장할 수 있다
- 제 58조 (시체, 유골의 교부) 시체 또는 유골은 청구에 의하여 친족 또는 친지에게 교부한다 단 합장후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제 59조 (시체, 유골의 합장) 시체 또는 유골을 가장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는 합장할 수 있다
- 제 60조 (시체의 해부) 수형자의 시체는 학술연구상 필요한 때에는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부하기 위하여 병원 기타 공무소에 송부할 수 있다

제 14 장 미 결 수 용

- ☛ 교도소와 구치소는 엄격분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구치소의 미결수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미결수용에 관하여 자세하고 상세한 미결수용처우에 대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제 61조 (참관금지) 구치소와 미결수용실은 참관할 수 없다 단 수용자의 인권과 처우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 제 62조 (미결수용자의 분리수용) 구치소에 수용된 자로서 사건에 상호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고 상호접견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 63조 (단속금지)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의 두발은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속하지 못한다
- 제 64조 (식량등의 자변) 구치소는 식량, 의류, 침구는 자변한다 단 자변이 불가능한 자는 관급한다
- 제 65조 (작업과 교회) 구치소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다

- 66조(변호인의 접견 등) 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 67조(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구치소에 준한다.
- 68조(시행령) 본법 시행에 관하여 그 시행령은 둔다.